

2013 보험관련 연합 학술대회

# 고령사회에서의 공·사 연금 역할

2013. 8. 19

 SCH 순천향대학교

김 용 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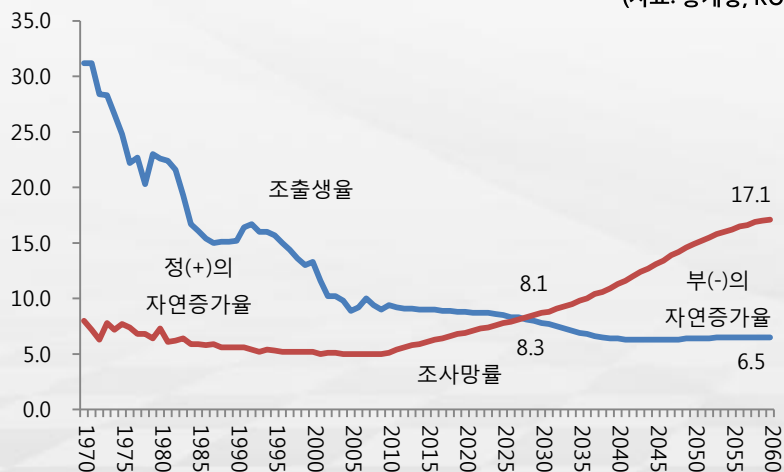
# 1. 고령화와 연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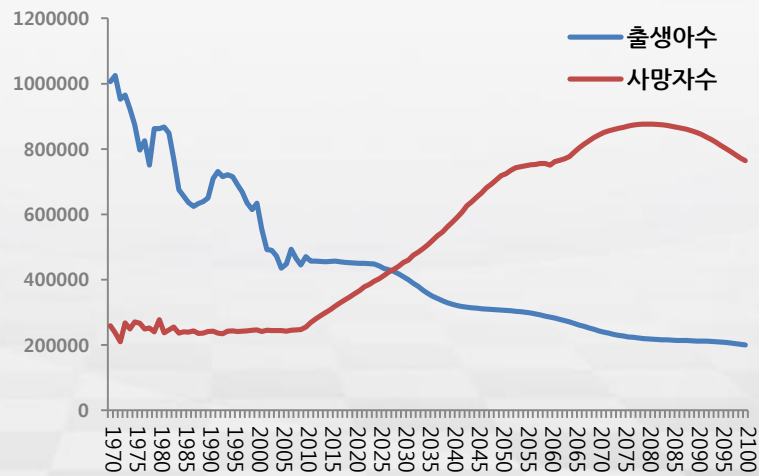
- ‘다산소사(多産少死)’에서 ‘소산다사(少産多死)’로의 인구전환으로 자연증가율 감소
  - 베이비붐 세대가 출생한 시기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6.33명으로 가장 높았으며, 1975년 이후 급감하여 1983년 인구대체수준에서 '05년 1.08명까지 감소, '10년 1.23명으로 세계 최저수준 지속
  - 1970년 기대수명은 남성 58.7세, 여성 65.6세였으나 '09년 현재 남성 77세, 여성 83.8세로 급격하게 증가 (남성 18.3세, 여성 18.2세 증가)
  - 저출산, 저사망으로 인구증가율은 1970년 23.2명(인구천명당)이었으나,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'10년 4.3명으로 1970년의 약 1/4 수준임.
  - '28년부터 부(負)의 성장(출생 425천명, 사망 430천명)으로 바뀌며, '60년에 출생 285천명, 사망 751천명으로 사망이 출생을 압도할 전망

인구증가율 추이(1970~2060)

(자료: 통계청, KOSIS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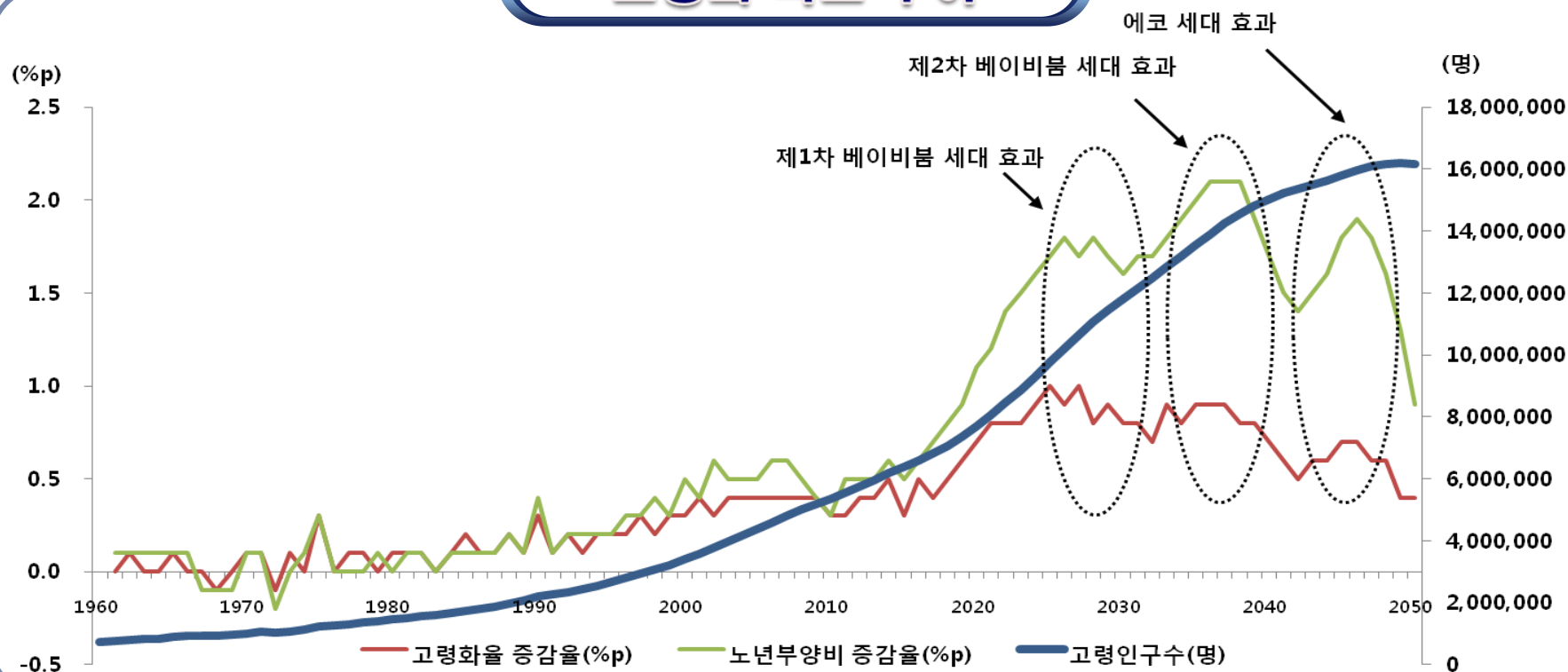
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



## ▶ 2020년대 중반까지 노년부양비 급속증가

- 2050년까지 세대효과로 증가율의 변화는 있으나 노인인구 수는 지속 증가

### 고령화 속도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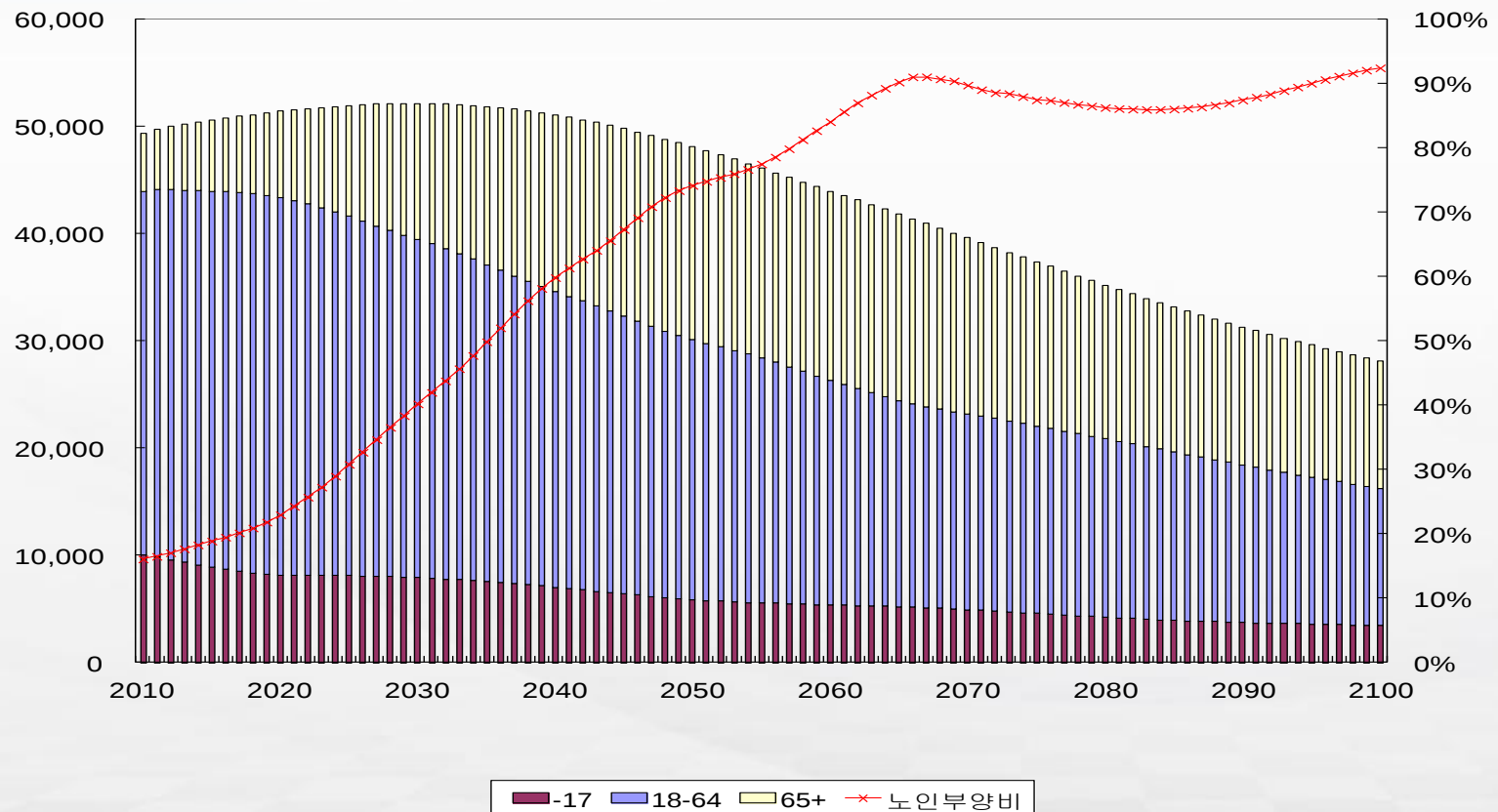
주: 고령자비율=65세 이상 인구/총인구수, 노인부양비율=65세 이상 인구/생산가능 인구  
 자료: 통계청, 「장래인구추계」, 2010; 박시내 외, 「베이비붐 세대의 현황 및 은퇴효과 분석」, 통계개발원, 2010 재인용.

# 인구 감소 + 노인인구 증가 => 노인부양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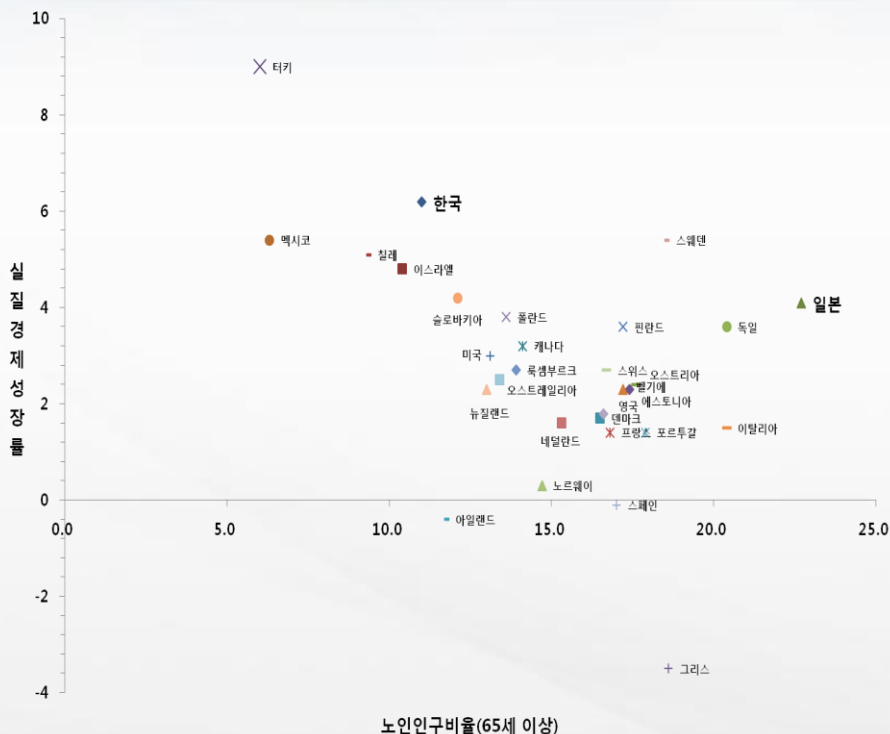
5

▶ 한국은 단순한 인구의 고령화가 아닌 인구감소와 중첩 문제

● 총인구의 감소(근로인구의 감소)와 노인부양비율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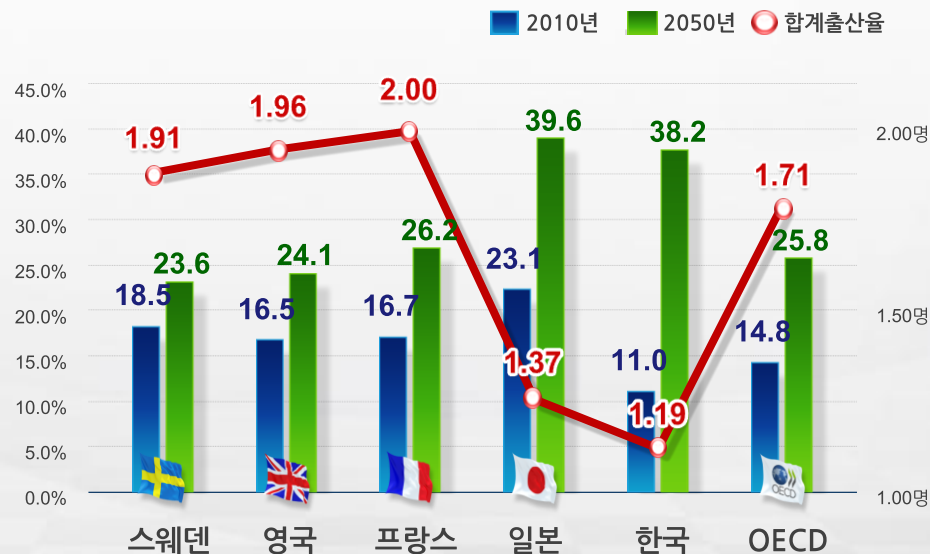
## 노인인구비율과 경제성장률 (2010년, OECD 국가)



- OECD 국가의 노인인구비율과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보면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나라가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은 경향을 보임. 인구총량보다도 인구구조가 중요함.

## 주요국의 2010년~2050년 노인인구비율 비교 (저출산 문제)

- 저출산 현상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영국, 프랑스, 스웨덴 등은 현재는 우리나라보다 고령화율이 높지만 2050년에 이르면 25% 내외의 노인인구비율을 유지
-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스웨덴, 영국, 프랑스 보다 낮아질 가능성 존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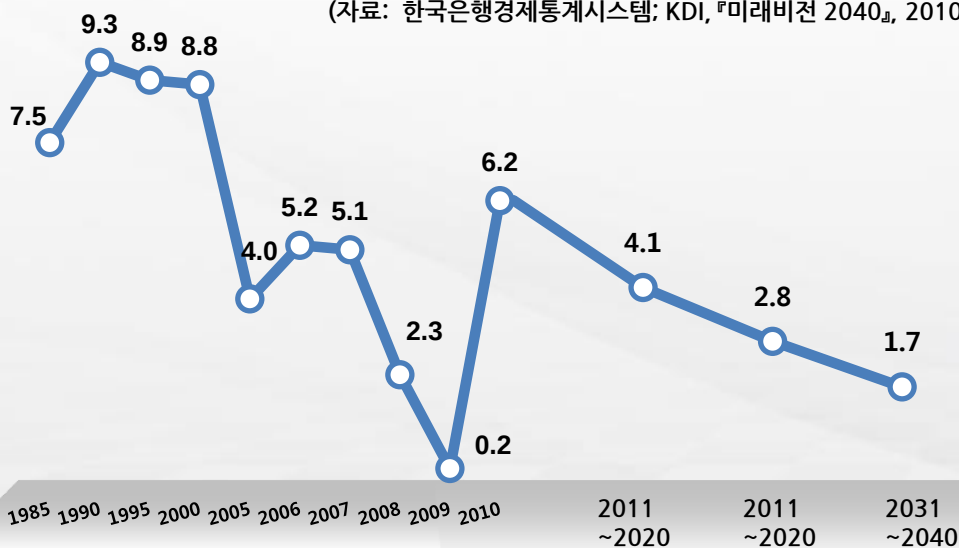


# 초고령사회 : 한국의 경제사회 그리고 재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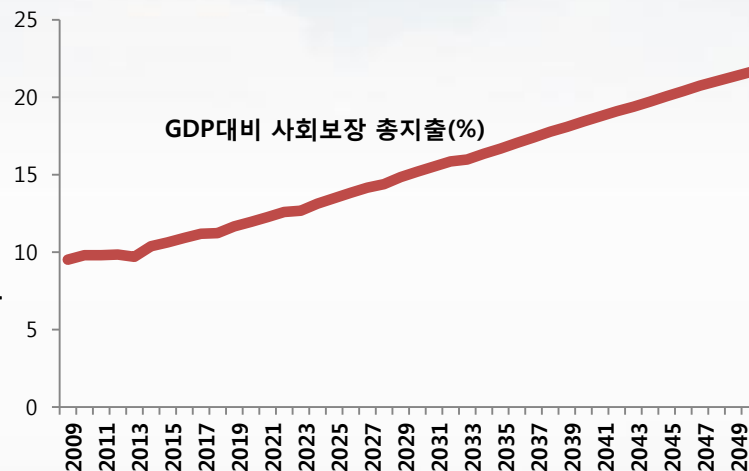
- KDI의 전망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점차적으로 하향하여 현재 4%대에서 2%~1% 대로 떨어짐
- 따라서 중장기적인 경제성장률 관리는 인구의 관리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인구를 주어진 변수로 볼 것이 아니라 통제가능한 변수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.
- 노인인구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지출 증가와 세대갈등 문제도 고려 필요

## 경제성장률 전망

(자료: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; KDI, 『미래비전 2040』, 2010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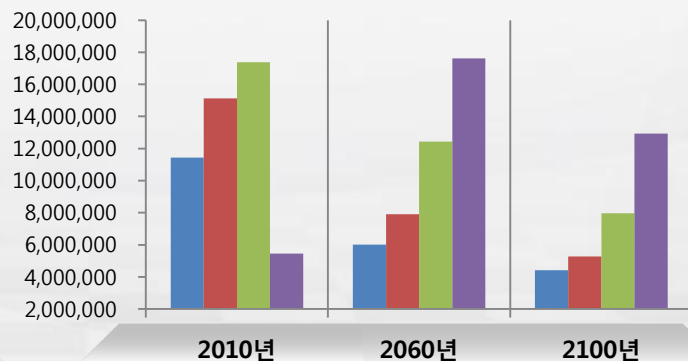


## 사회보장 재정전망



## 세대 갈등

■ 0-19세 ■ 20-39세 ■ 40-64세 ■ 65세 이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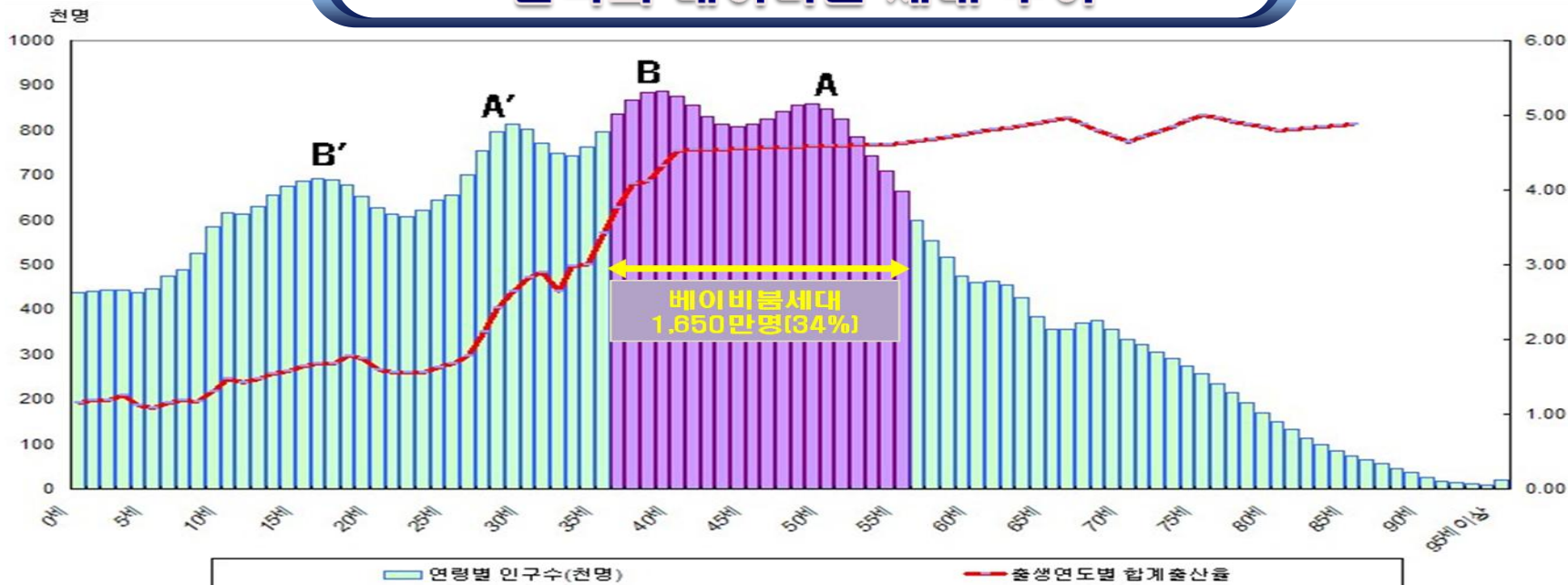


# 초고령사회 핵심과제 (1) : 베이비붐 세대

8

- ▶ 1,650만명의 제1차,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쓰나미처럼 움직이면서 우리나라의 경제·사회적 특징 주도
  - 제1차 베이비붐 세대: 한국전쟁 이후인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 이전에 태어난 세대(1955~1963년생)
  - 제2차 베이비붐 세대: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빈곤의 늪에서 빠르게 벗어나면서 태어난 세대(1968~1974년생)

##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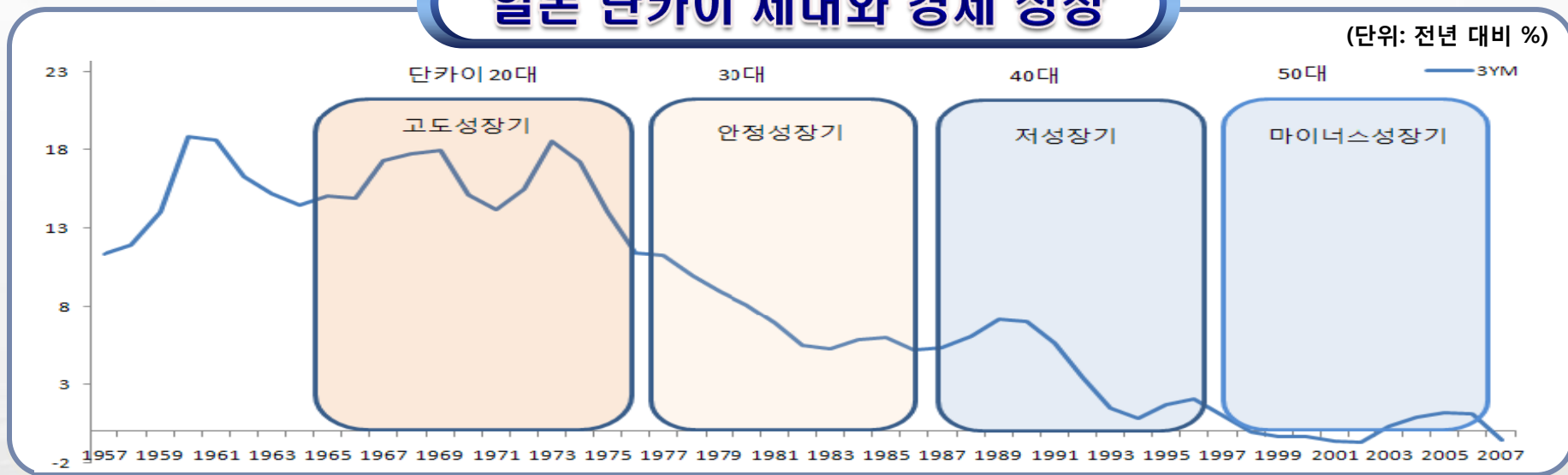


# 베이비붐 세대 : 미국과 일본

9

- ▶ 미국 베이비붐 세대는 사회 변동요인으로서 미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침.
  - 이전 세대의 권위에 저항하고, 반전문화와 히피문화 및 특유의 개인주의 성향을 발전시킴.
  - 막대한 다수를 점하는 이들은 거대한 소비시장을 구성하였고, 소비를 통해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추구
- ▶ 일본 단카이 세대는 고도성장기 후기에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이후 일본 경제 및 기업의 발전과 궤도를 같이하며 성장

## 일본 단카이 세대와 경제 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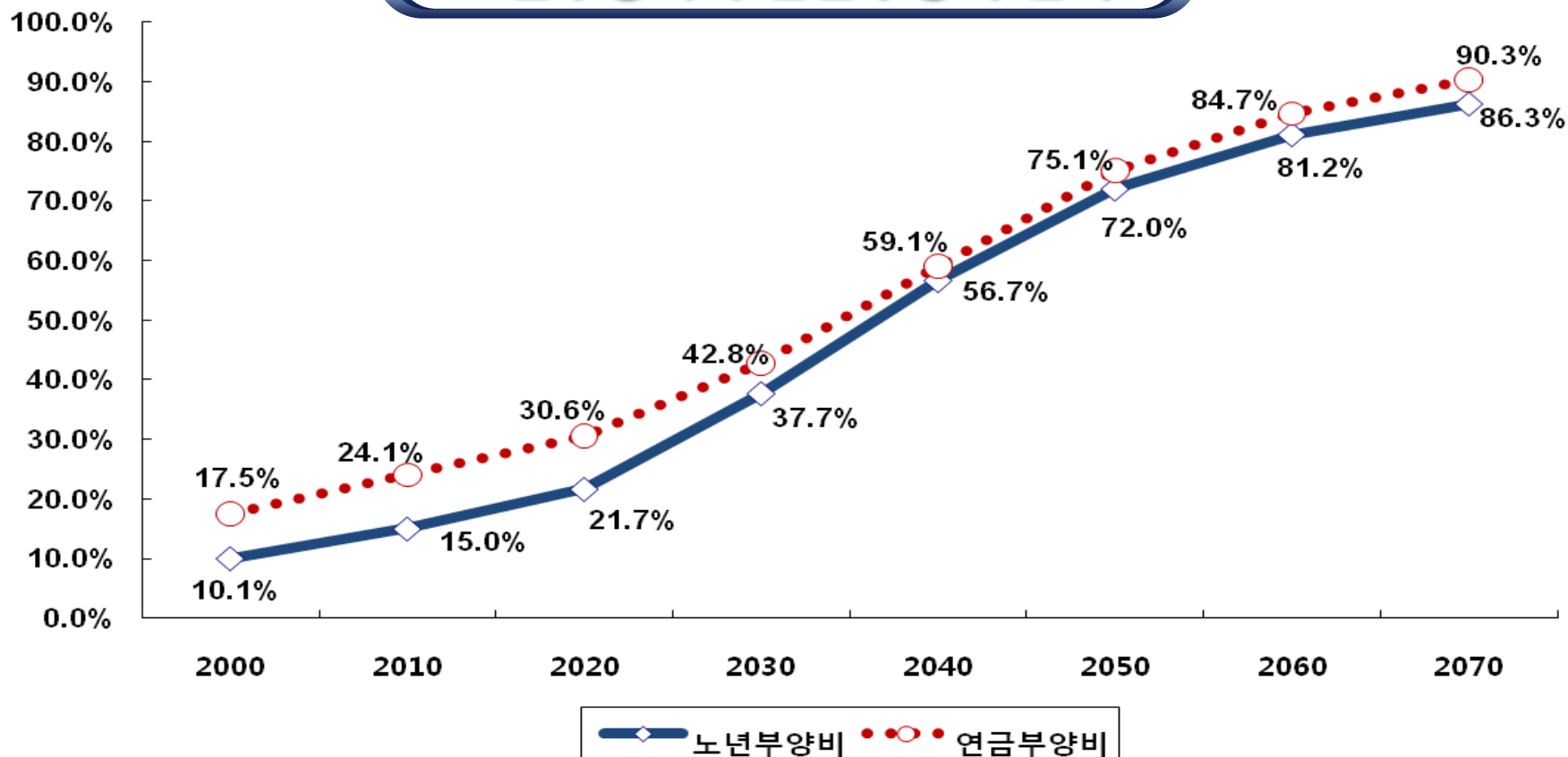


주: 경제성장률은 명목 GDP 기준(3YM은 3년)

자료: 정호성 외, 「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」, 삼성경제연구소, 2010.

- ▶ 인구상의 노년부양비보다 제도상의 연금부양비 더 높음
  - 연금 수급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점차 전환되면서 격차 축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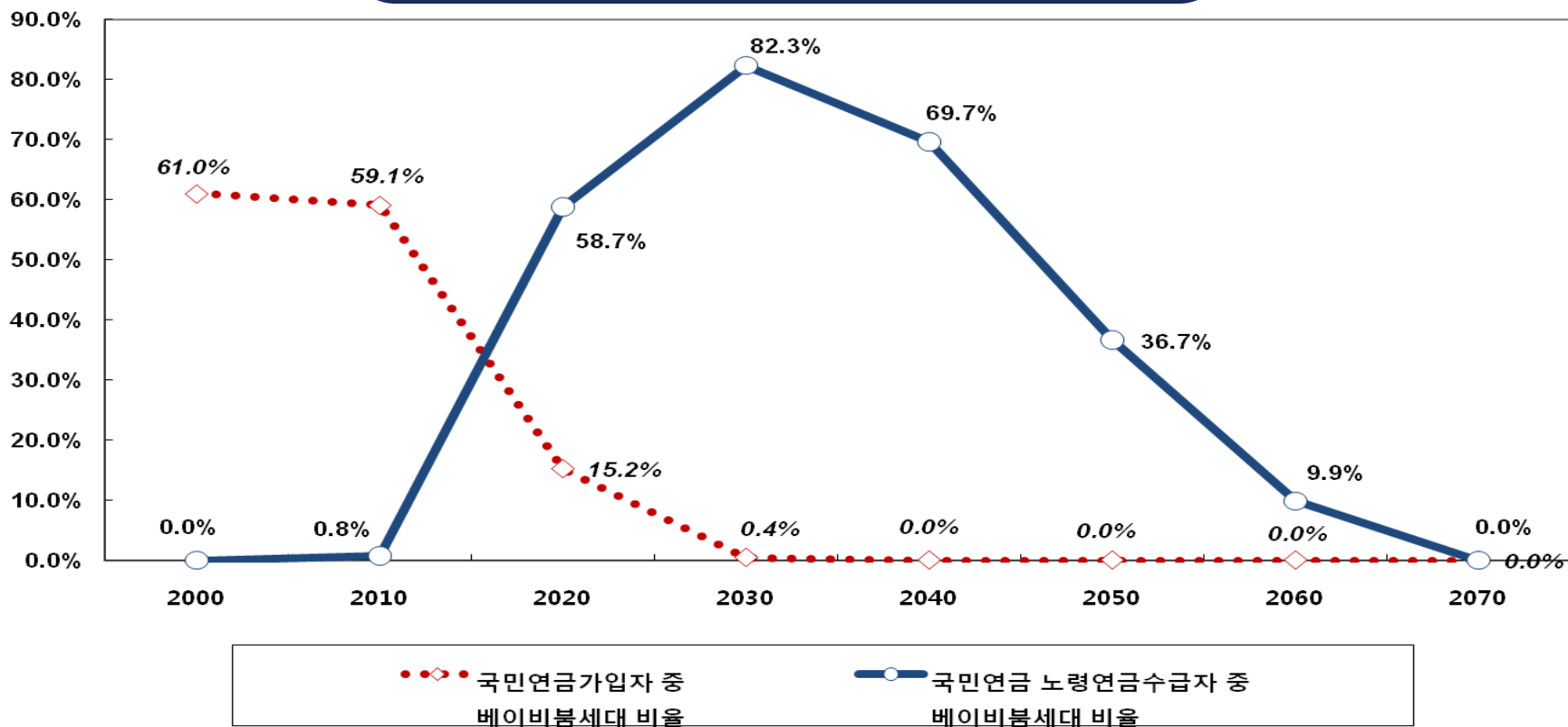
## 노년부양비와 연금부양비 변화



## ▶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국민연금 급여지출 폭발적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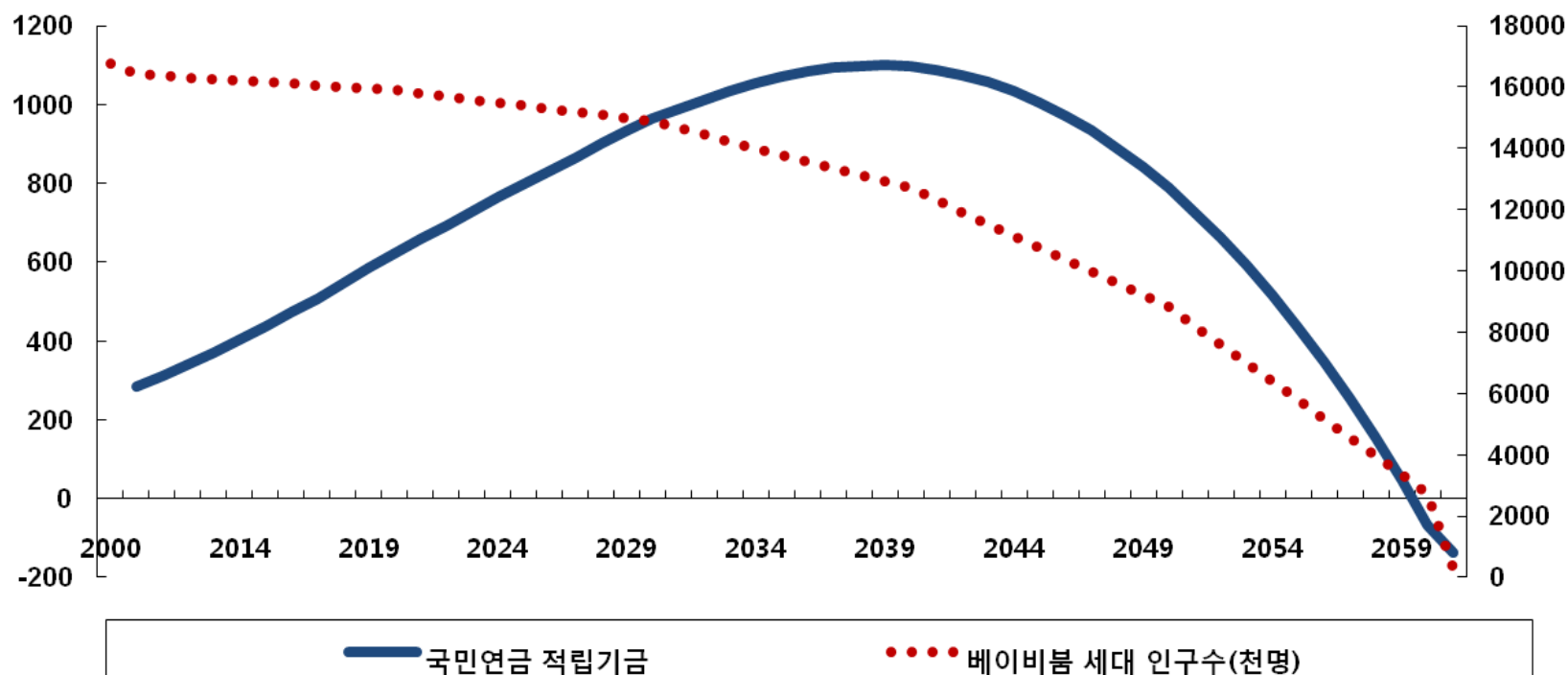
- 동 세대는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에 30년 가입한 세대로 국민연금 최대 수혜자이면서 재정악화의 주된 요인

### 베이비붐 세대의 국민연금 영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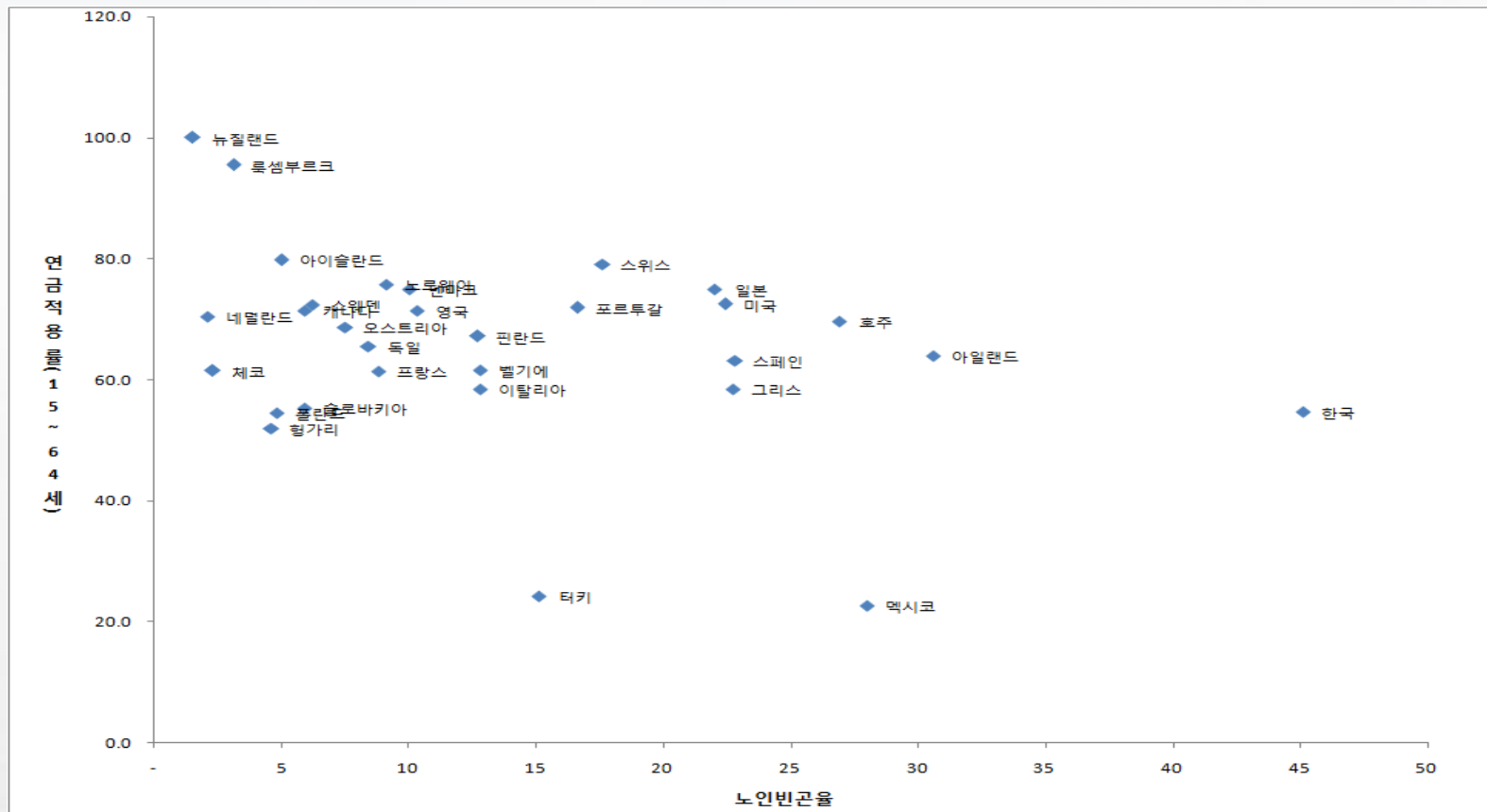
- ▶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사망하는 시점에 국민연금 기금도 동시에 고갈
- 베이비붐 세대는 국민연금 기금 증식을 주도한 세대에서 국민연금 기금 잠식을 주도하는 세대가 됨.

## 베이비붐 세대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 적립금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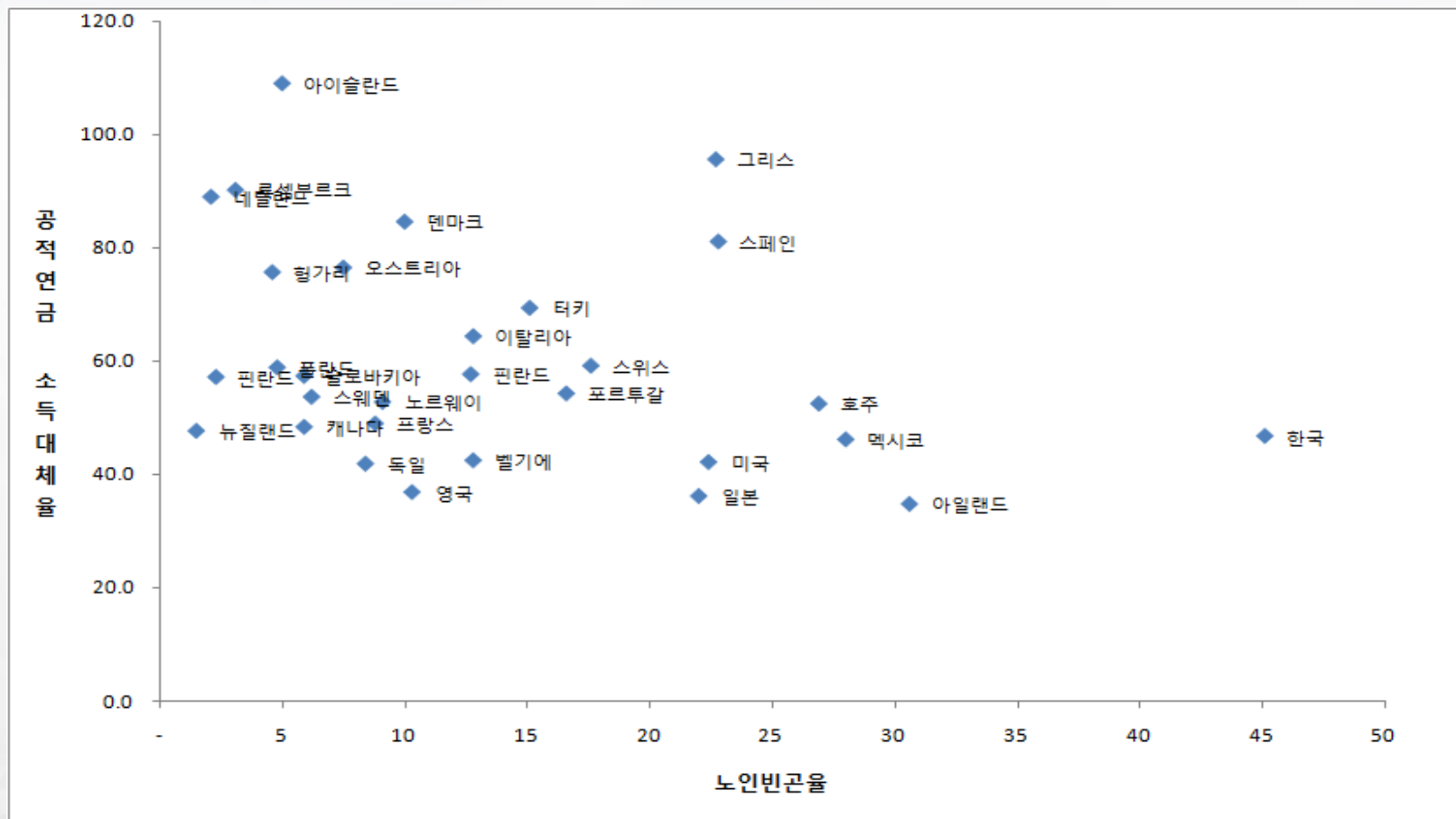
## ▶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 [공적연금 도입지체와 적립식 제도]

- 비정규직, 영세자영자, 낮은 여성고용 등으로 공적연금 적용률 저조



▶ OECD 국가 중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대적으로 낮음.

● 실질 소득대체율 더욱 낮음. (평균소득자 30년 가입기준 : 30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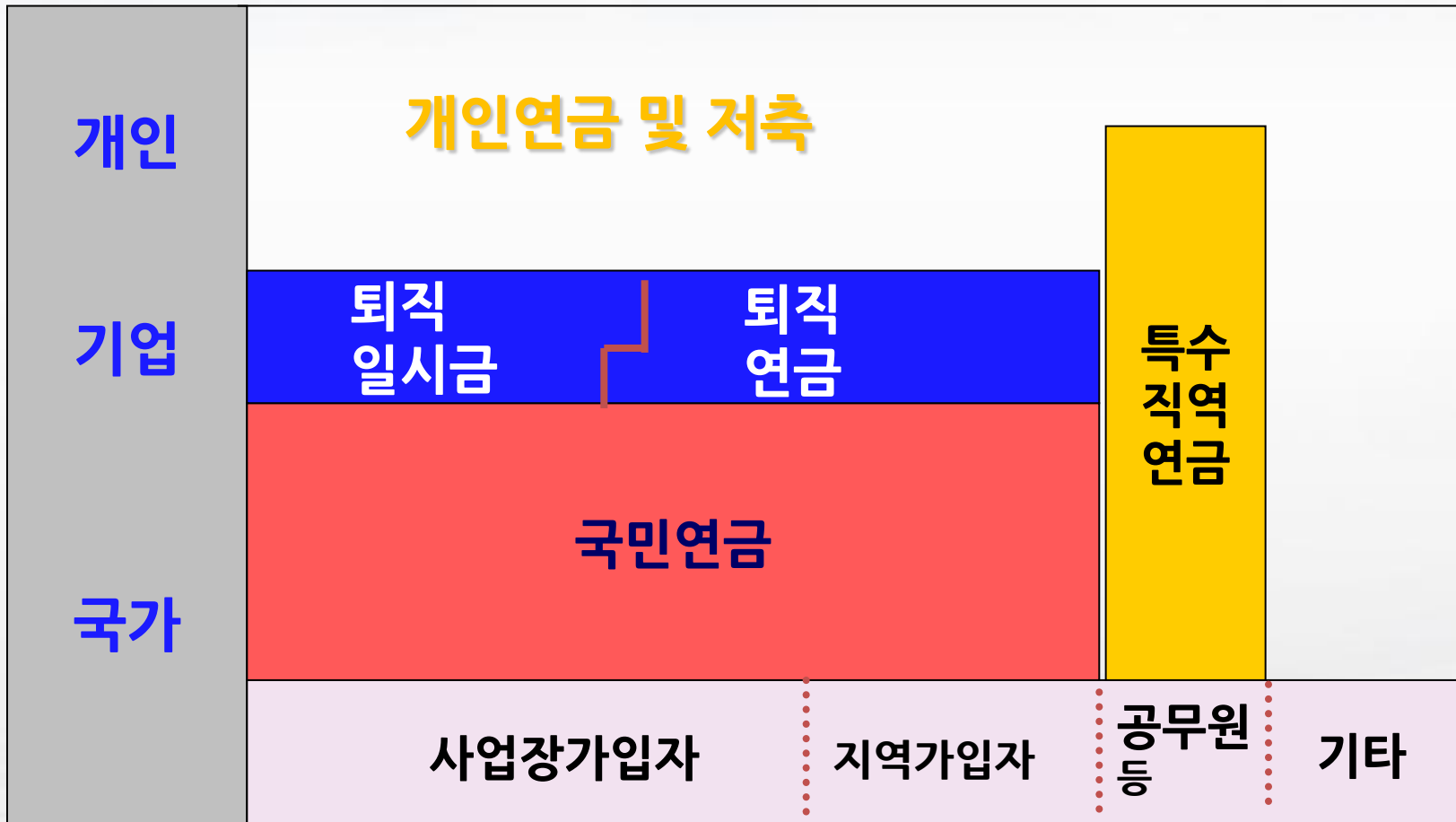


# 초고령사회 핵심과제 (3) : 공·사 소득보장 체계 미정립

15

## ▶ 직역별 분리형 연금체계 : 형평성 문제

- 사적연금은 급속 성장 중이나, 소득보장 기능은 제한적



## II. 공적연금 위상정립



# 공적연금 정책과제 (1) : 기초노령연금 개선

17

## ▶ 국민행복연금 인수위안은 전체노인에게 연금지급 설계

- 국민연금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동하여 기초연금 비례 지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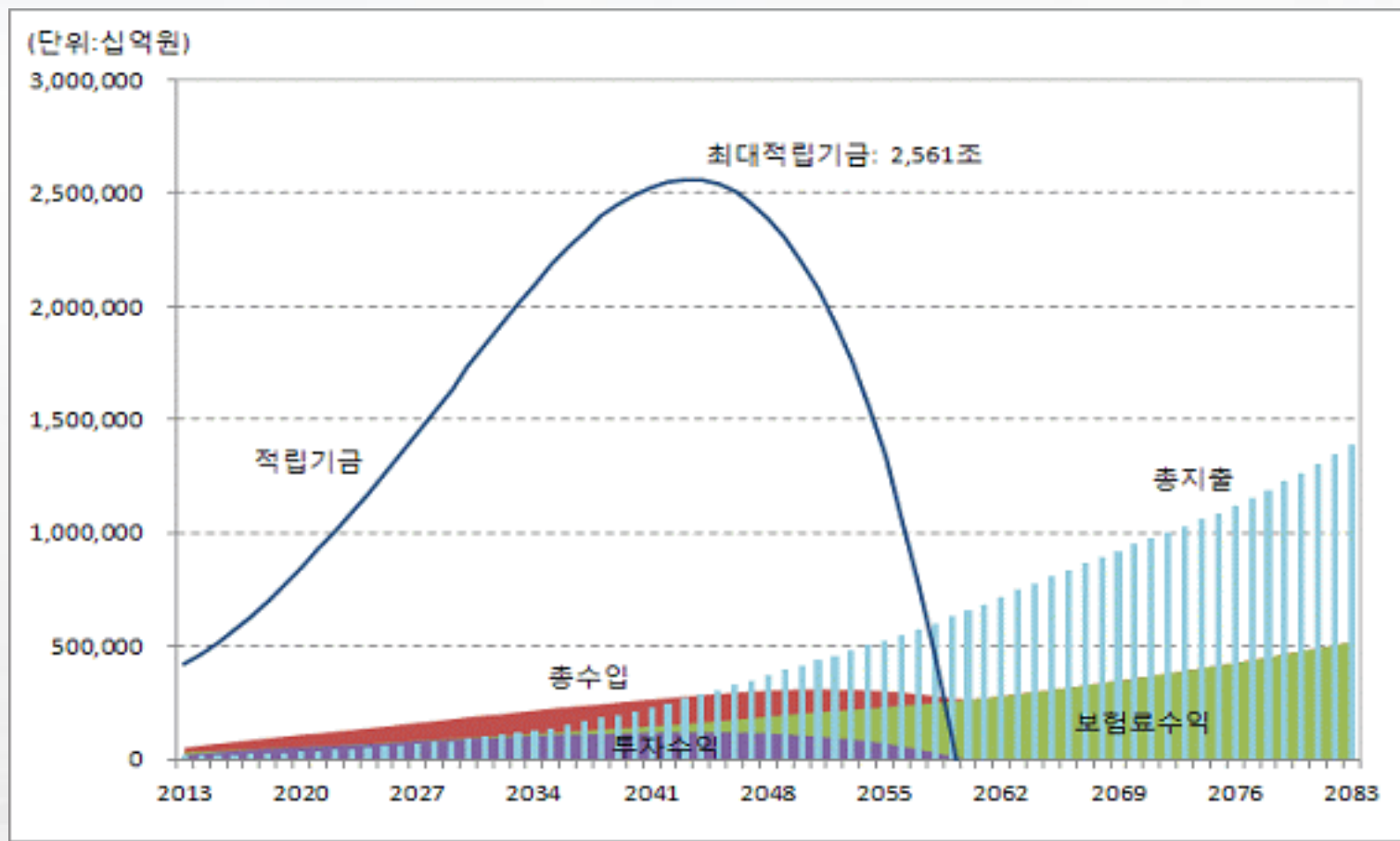
|       | 하위 7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상위 3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      | 수급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수급자 | 수급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수급자 |
| A값 대비 | 40년 : 10%<br>30년 : 9%<br>20년 : 8%<br>10년 : 7%        | 10%  | 40년 : 5%<br>30년 : 4%<br>20년 : 3%<br>10년 : 2%      | 2%   |
| 금액기준  | 40년 : 20만원<br>30년 : 18만원<br>20년 : 16만원<br>10년 : 14만원 | 20만원 | 40년 : 10만원<br>30년 : 8만원<br>20년 : 6만원<br>10년 : 4만원 | 4만원  |

# 공적연금 정책과제 (2) : 국민연금 장기적 재정 불안

18

## ▶ 제3차 국민연금재정 재계산 결과 : 2060년 적립기금 소진

- 2040년대 초반 적립기금 최대, 이후 급속 감소 (60년 적립, 17년 소진)



# 공적연금의 정책과제 (3) : 특수직역연금 재정 불안

1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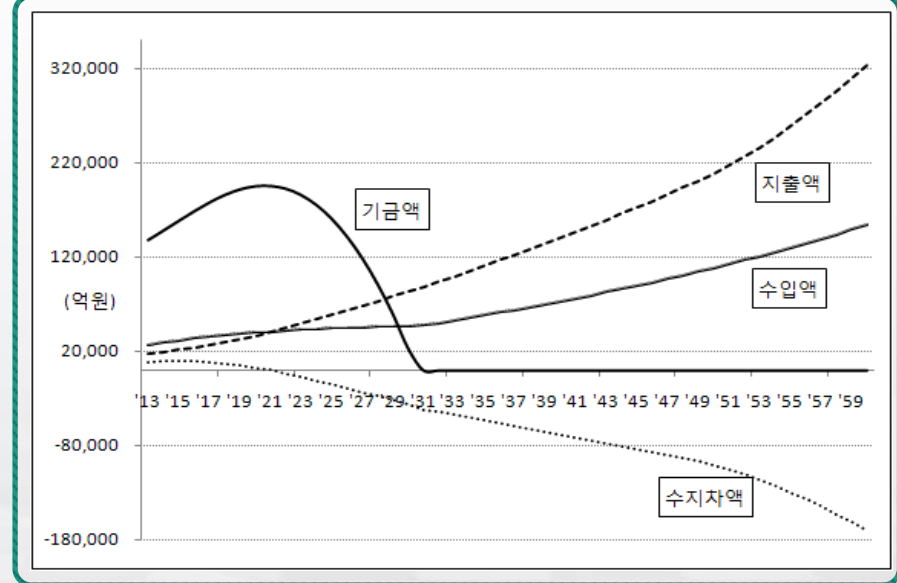
## ● 2009년 재정안정화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연금재정불안 여전

- ▶ 공무원 연금 등 수지균형 부과방식 보험료율 : 30% 대
- ▶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에 대한 국고에 의한 적자 보전 : 과거 연금부채 상환
- ▶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국가책임 개념 모호

공무원연금 재정전망

| 연도   | 급여지출    | 보험료수입   | 정부보전금   | 급여지출 대비<br>정부보전금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2010 | 7,255   | 5,908   | 1,348   | 18.6%            |
| 2015 | 13,567  | 8,852   | 4,716   | 34.8%            |
| 2020 | 22,046  | 12,007  | 10,038  | 45.5%            |
| 2025 | 33,047  | 15,168  | 17,879  | 54.1%            |
| 2030 | 48,084  | 20,120  | 27,964  | 58.2%            |
| 2035 | 64,387  | 26,266  | 38,121  | 59.2%            |
| 2040 | 82,571  | 33,913  | 48,658  | 58.9%            |
| 2045 | 97,769  | 43,440  | 54,329  | 55.6%            |
| 2050 | 113,058 | 54,154  | 58,905  | 52.1%            |
| 2055 | 141,160 | 66,734  | 74,426  | 52.7%            |
| 2060 | 179,138 | 82,281  | 96,858  | 54.1%            |
| 2065 | 226,763 | 102,313 | 124,450 | 54.9%            |
| 2070 | 286,186 | 128,752 | 157,433 | 55.0%       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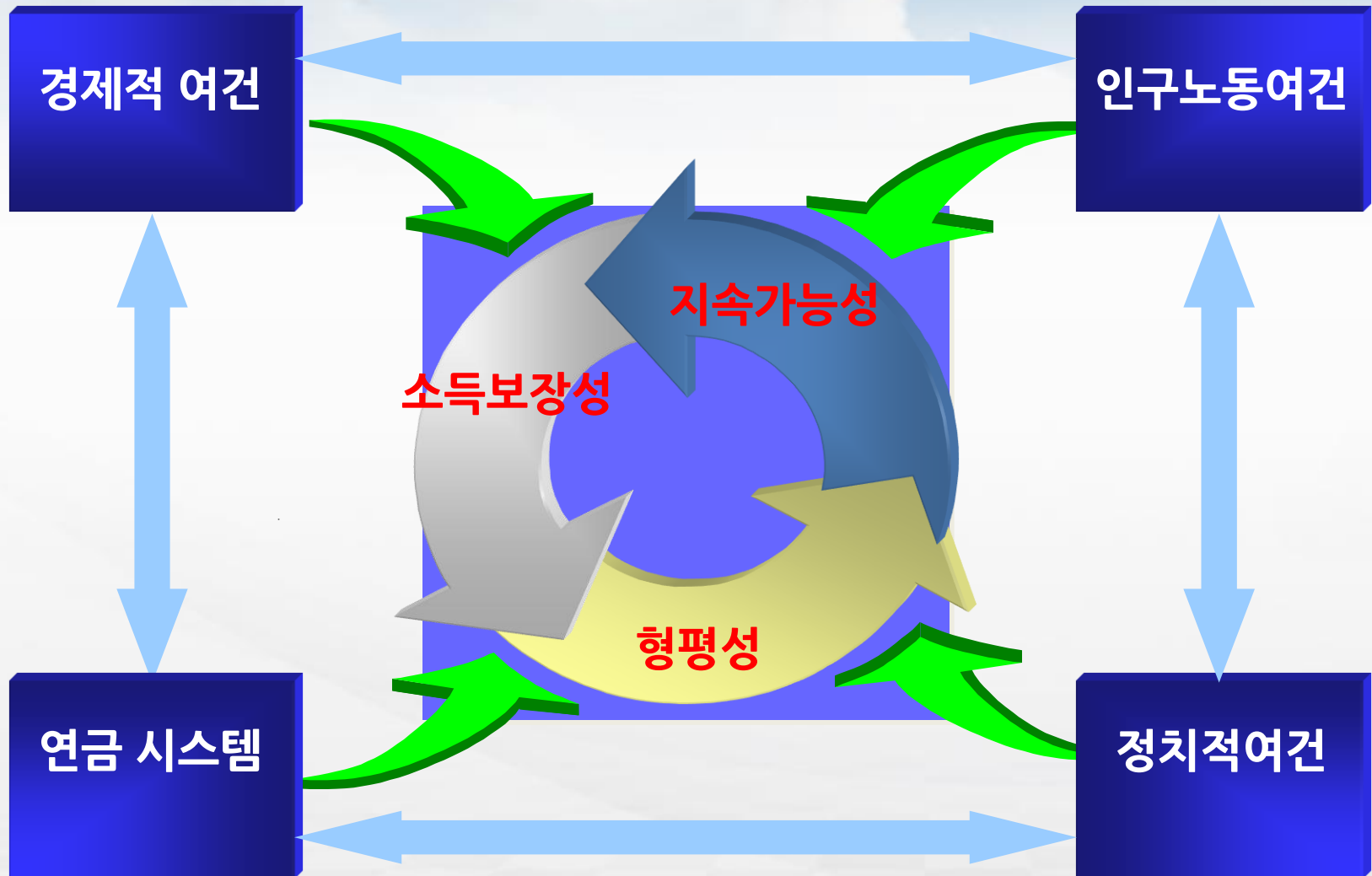
사학연금 재정전망



# 공적연금의 정책과제 (3) : 특수직역연금 재정 불안

20

| 연금개혁 내용            | 2010년 이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혁 후 (2010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급여 및 기여금 산정기준보수 변경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u>보수월액</u><br/>(기본급+정근수당+정근수당)</li> <li>* 기준소득의 65% 수준</li> </ul>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u>기준소득월액</u><br/>(월평균 과세소득수준)</li> <li>* 초과근무수당·성과급 등은 평균액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|
| 연금산정 기준보수 평균기간 확장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u>퇴직 전 3년 평균</u>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u>전(全) 재직기간 평균</u></li> <li>* 법 시행일 이후 기간부터 적용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여금·부담금 인상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u>보수월액의 8.5%</u></li> <li>* 기준소득 기준 5.525%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u>기준소득월액</u>의 7.0%</li> <li>* 6%('09) → 6.3%('10) → 6.7%('11) → 7%('12)</li> </ul>         |
| 연금지급액(지급률) 인하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×[50%+(재직기간-20)×2%]</li> <li>* 33년 재직 상한 : 76%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u>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</u>×재직기간×1.9%</li> <li>* 33년 재직 상한 : 62.7%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|
| 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u>60세</u> 지급</li> <li>* 단, '01년 50세부터 2년에 1세씩 연장, '21년 60세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u>65세</u><br/>( '10.1.1이후 신규임용자 적용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연금액 조정방법 변경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u>CPI+정책조정</u></li> <li>* 보수·물가간 ±2%p 내 조정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u>'15부터 CPI 적용</u></li> <li>* '10~14 : 보수·물가간 ± 3%p내 조정</li> <li>* '15~ : CPI적용</li> </ul> |
|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퇴직연금액의 <u>70%</u>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퇴직연금액의 <u>60%</u>( '10.1.1이후 신규임용자 적용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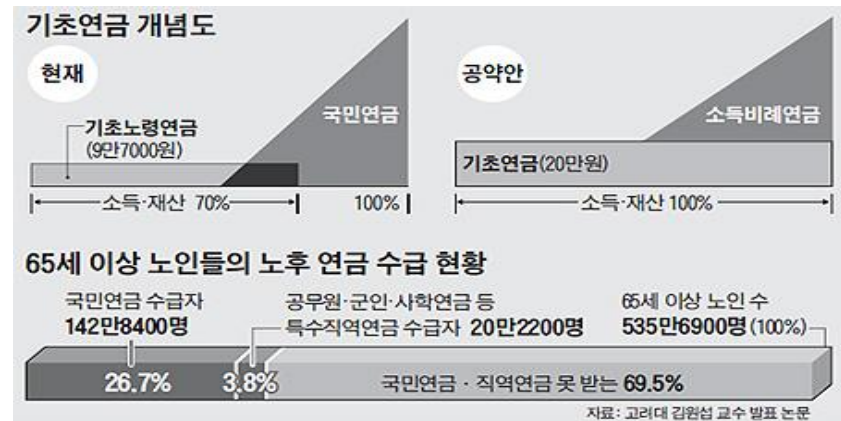


## 인수위 기초연금 파장

- (1) 국민연금 기금으로 재원일부 조달
- (2) 국민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불지급
- (3)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

## 제도개선의 기본원칙

- (1) 세대내 세대간 형평성 제고
- (2) 장기적 재원조달 방안 구축
- (3) 국민연금제도 안정성 불침



### 인수위 기초연금 도입 방안 인수위 안

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국민연금 미가입자 | 소득 하위 70% |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소득 상위 30% | 기초연금 미지급 원칙. 소액이라도 줄지 검토 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국민연금 가입자  | 소득 하위 70% | 기존 국민연금+기초노령연금(9만7100원)+ 소득·가입 기간 따라 0~9만7100원 차등 지급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소득 상위 30% | 기존 국민연금+소득·가입 기간 따라 0~9만7100원 차등 지급<br>※기초노령연금 해당액(9만7100원) 줄지는 검토 중 |

※소득 하위 70%는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, 소득 상위 30%는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

## 대상자·수급자

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%(80%) + 중증 장애인

## 금 여 수 준

국민연금 전년도 전가입자 평균소득의 10% = 20만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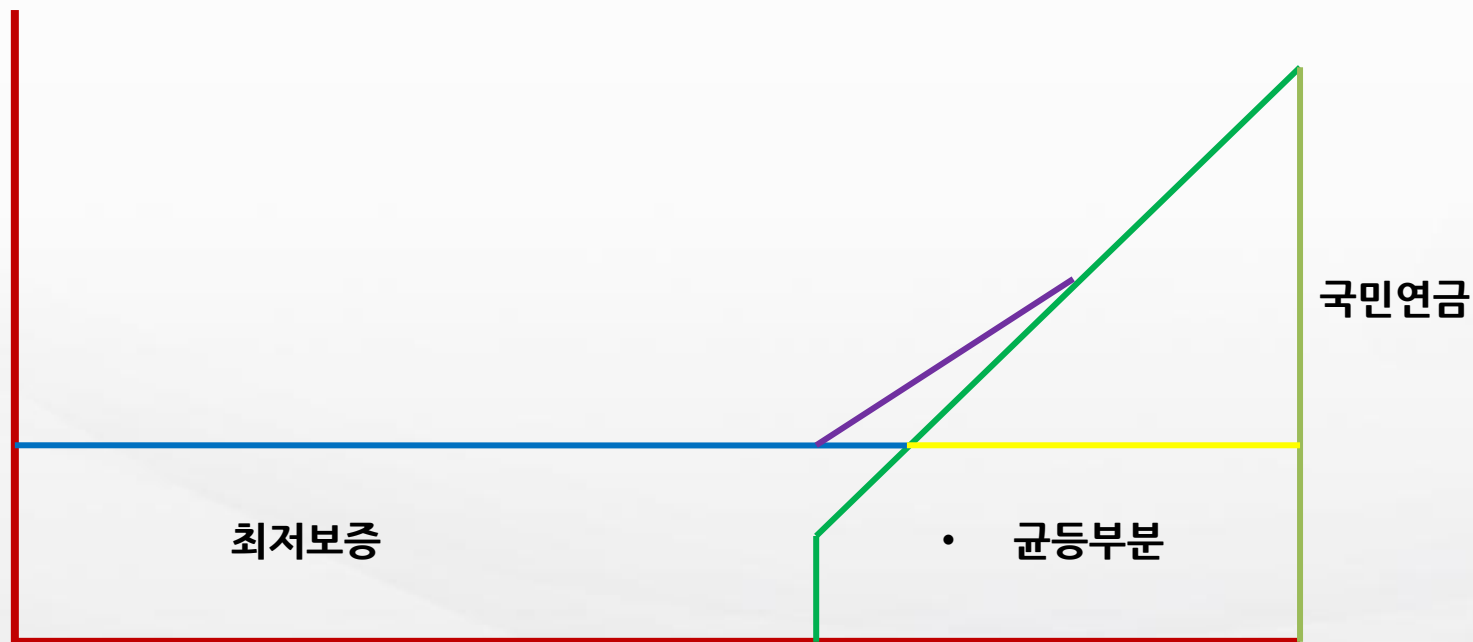
## 지 급 방 법

국민연금 수급자는 균등부분 (A) 값이 최소한 20만원

## 재 원 조 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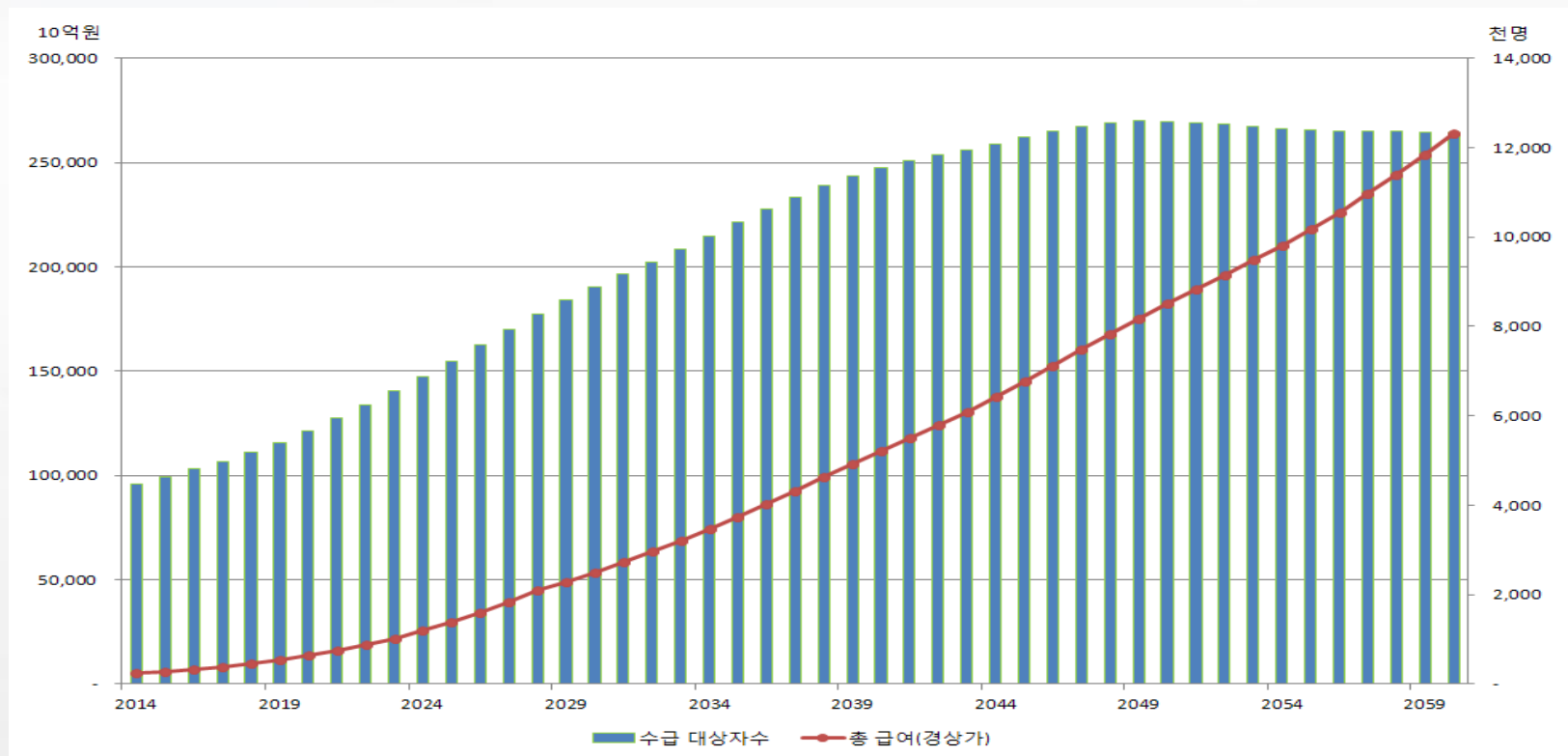
부과방식 운영 : 정부재정 (조세)

- ▶ 기초연금이나 최저보증연금이나의 논쟁보다 노후소득사각지대 해소 자체가 중요하며,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함



## ▶ 2020년까지 급여율을 10%로 단계적 인상 전제 지출전망

●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의 70% 가정



## 급여수준

2028년 급여율 40%로 단계 이행 (2007년 법령 개정)

## 수급연령

2013년 61세, 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 (1998년 법령 개정)

## 연금보험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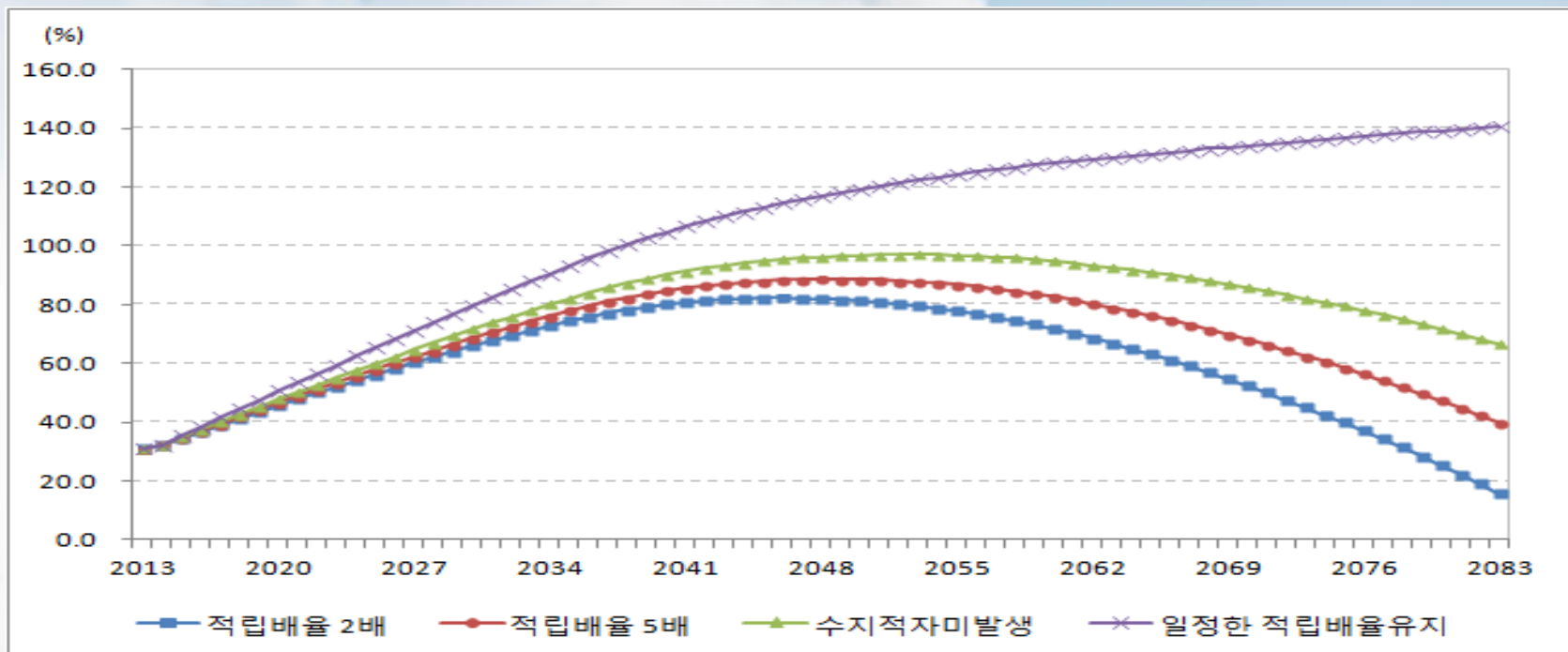
상향 조정이 필요하지만, 당분간은 어려움 (가계, 기업)

## 인구구조

합계출산율을 2.1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높여야 함

#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: 보험료 인상수단 한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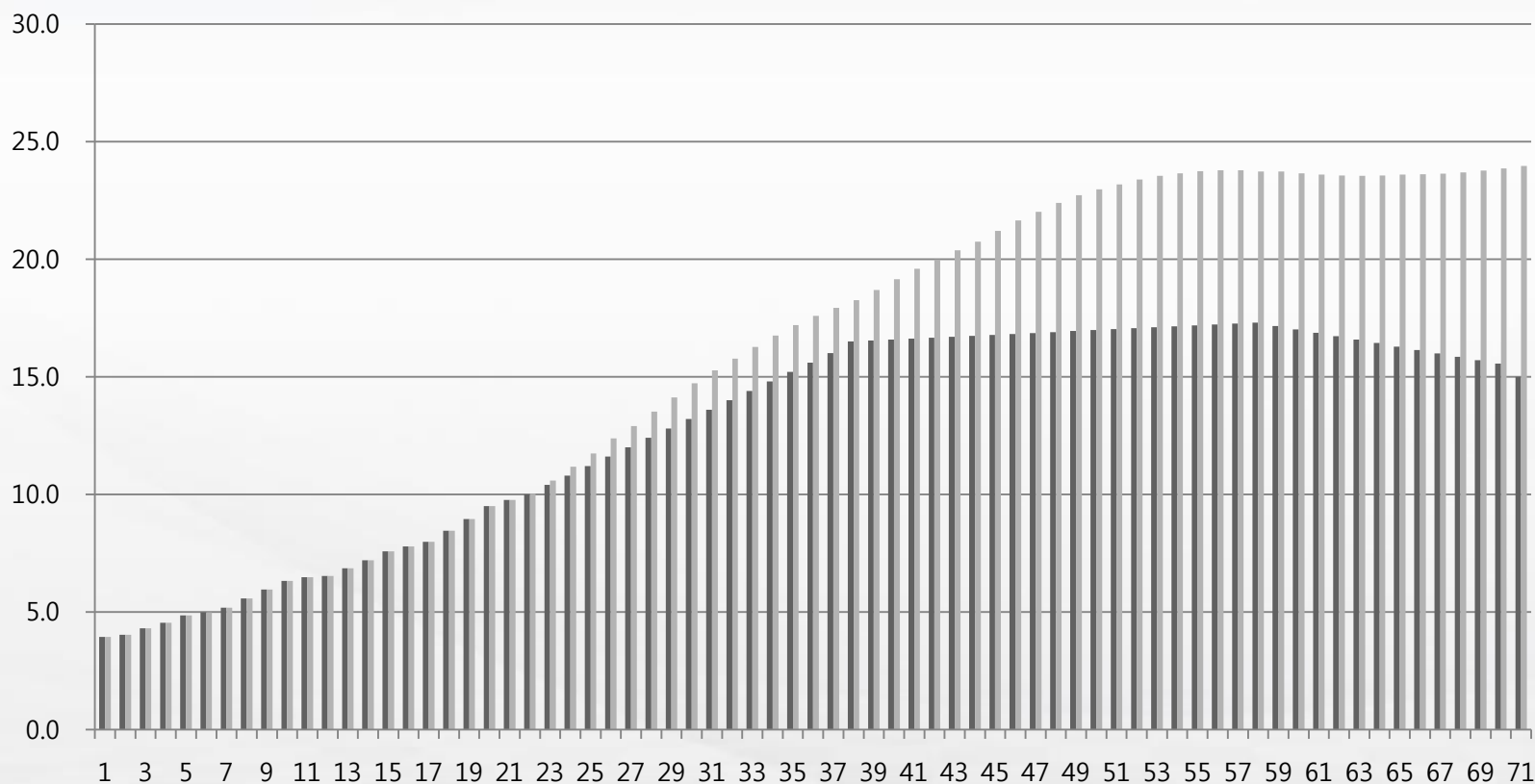
27



| 구분       | 재 정 목 표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         | 적립배율 2배 | 적립배율 5배 | 수지적자 미발생 | 일정한<br>적립배율 유지 |
| 제3차 재정계산 | 12.91%  | 13.48%  | 14.11%   | 15.85%         |

## ▶ 연금문제의 근본 해법은 인구구조의 개선 [출산율 2.1]

● 국민연금 가입자의 한계 보험료율은 15%선 (40 %급여 대응 보험료율)



## 국민연금가입자와 형평성

복합적인 급여체계를 다층체계로 개편(국민+퇴직+저축)

## 과거부채 장기적 상각

미적립연금부채를 산정하여 청산방안 강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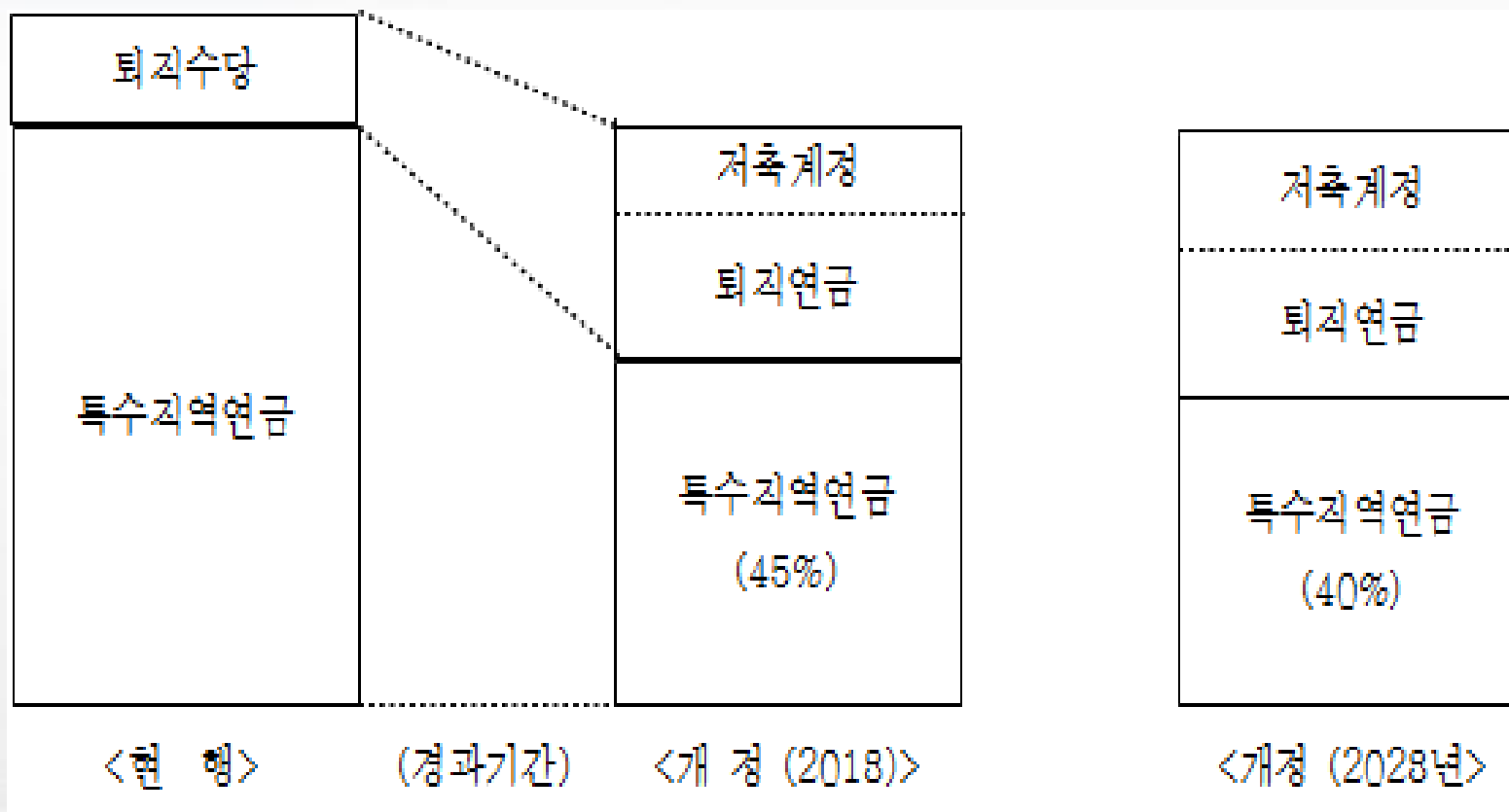
## 확정급여형 퇴직연금

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구축과 적립금의 적자재정 보전 대부

## 저축계정 신설과 지원

공무원과 국민연금 보험료 차액을 저축계정 불입, 장려금

- ▶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부분, 퇴직연금부분, 저축계정부분의 재설계
  -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일반근로자 수준으로, 저축계정 공무원 특성반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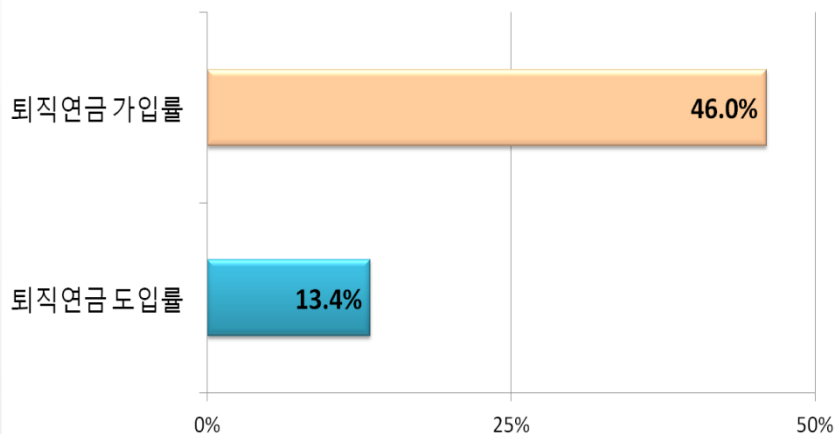


# III. 사적연금 기능개선



- 퇴직연금 도입률(전사업장 대비) 13.4%에 불과 : 퇴직연금 가입률은 46.0%
  - ▶ 호주 퇴직연금 가입률 95% ( 2011년 적립금 규모 1.3조 호주 달러)
- 개인연금 가입률 : 점진적으로 하향 추세 (2008년 31.8% → 2012년 21.4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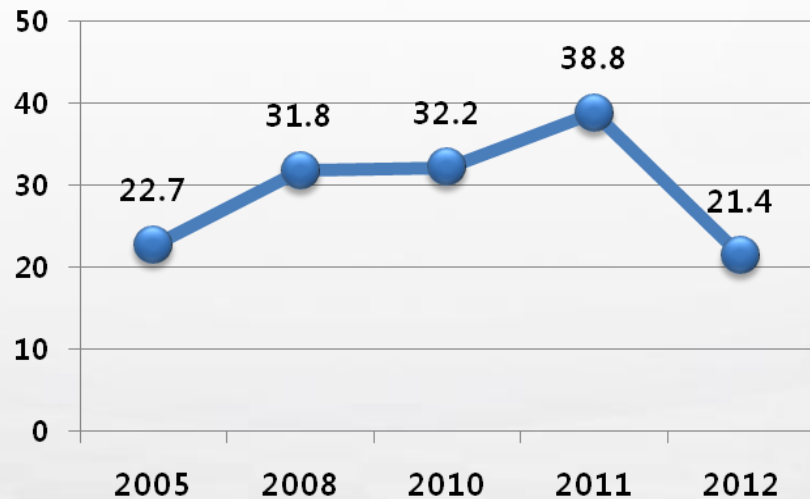
퇴직연금 가입자 수



주: 1) 퇴직연금 도입률 =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 / 전체사업장 수  
 2) 퇴직연금 가입률 = 가입자 수 / 전체 상용근로자 수

자료 : 고용노동부(2013)

개인연금 가입률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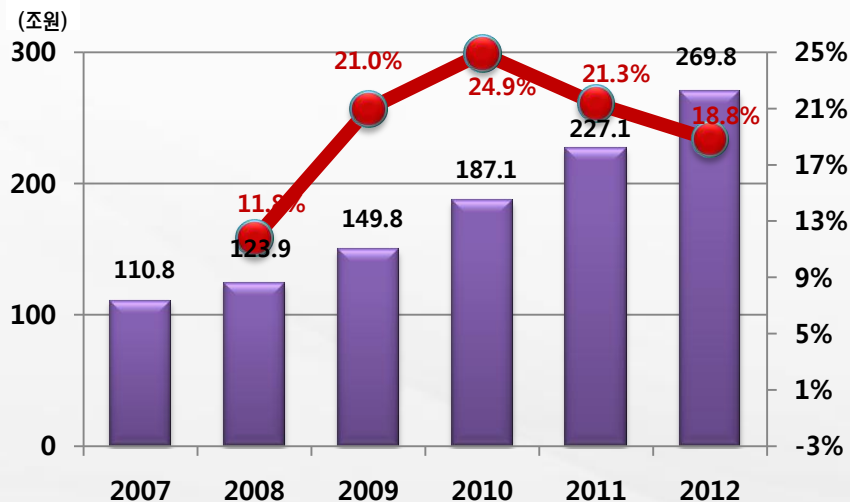


자료: 보험연구원,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각 연도

● 적립금 규모 : 2007년 110.8조에서 2012년 약 270조원으로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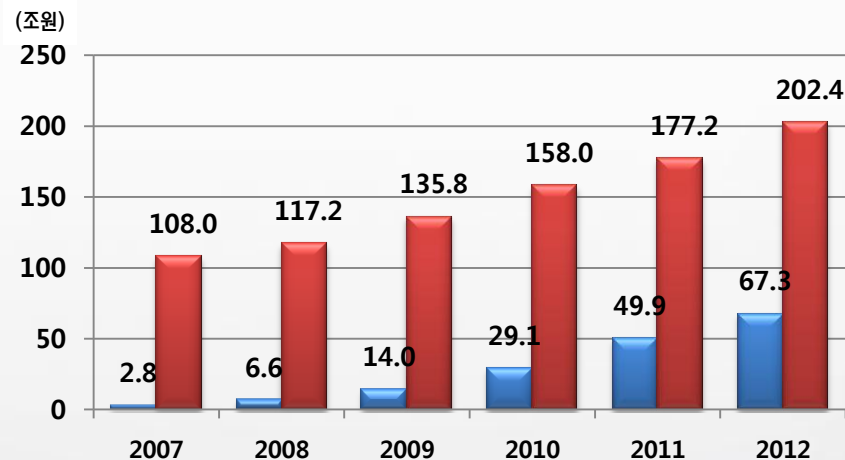
▶ 퇴직연금 적립금 약 67조, 개인연금적립금 규모 약 202조

## 사적연금의 적립금 규모 및 성장률



주 : 누적적립금 기준  
 자료 : 금융위원회(201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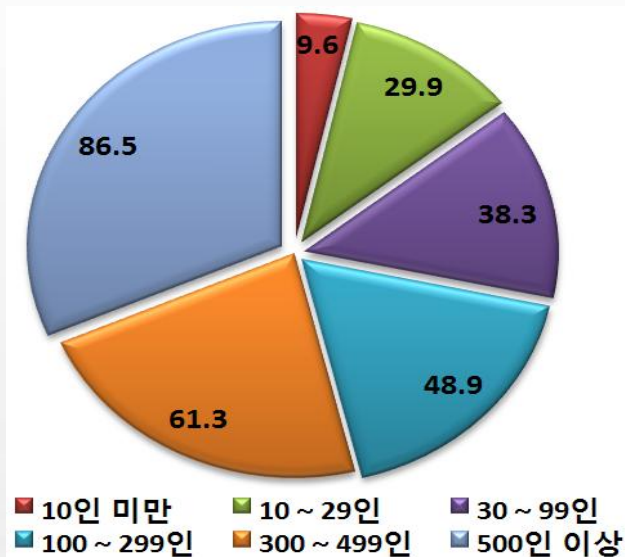
##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적립금 규모



주 : 개인연금은 연금저축과 연금보험(변액연금 포함)  
 자료 : 금융위원회(201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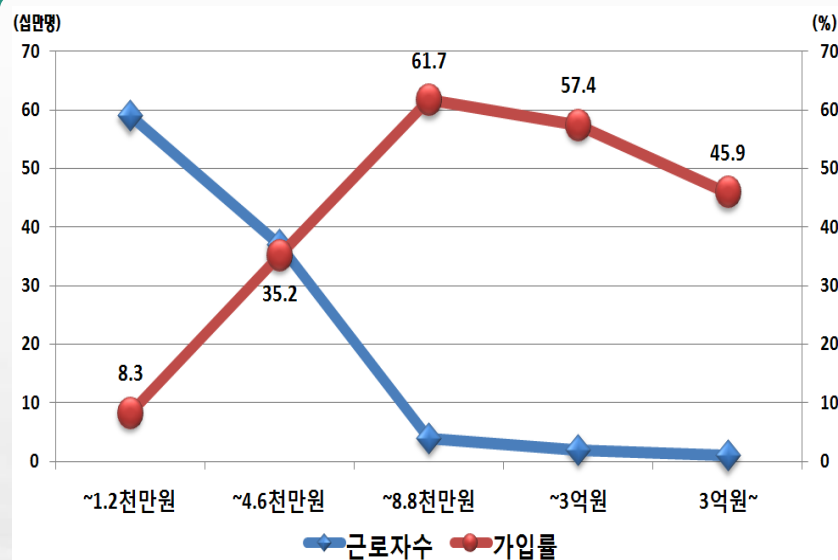
- 사적연금 사각지대 : 저소득근로자, 비정규직근로자, 영세사업장근로자, 저소득 베이비부머
- ▶ 소득의 양극화 등으로 저소득 계층 사적연금 가입 저조 → 사회적 이슈 대두 예상
- ▶ 10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률 9.6%, 1,200만원 이하 계층 개인연금 가입률은 8.3%

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가입률[%]



자료 : 고용노동부(2013)

소득계층별 개인연금 가입률[%]



자료 : 국세청

## ●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: 전체 임금근로자의 33%

▶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, 1주 15시간 단기간 근로자 : 퇴직급여제도 가입 불허용

## ● 소규모 영세사업장 및 베이비부머

▶ 퇴직급여제도 도입의무화 (2010년) : 사용자의 경제적부담 가중(임금) 등으로 제도가입 회피

▶ 50세 이상 중장년층 베이비부머 :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등으로 노후소득보장 대비 미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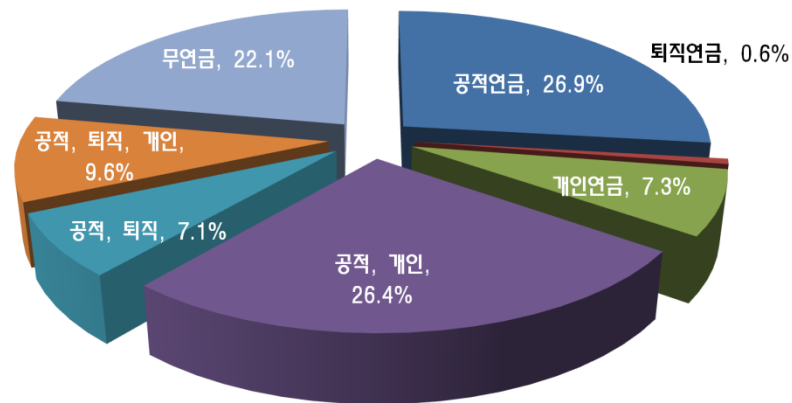
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

(단위 : 천명, %)

|         | 08.8   | 09.8   | 10.8   | 11.8   | 12.8   |
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임금근로자   | 16,104 | 16,479 | 17,048 | 17,510 | 17,734 |
| 정규직     | 10,658 | 10,725 | 11,362 | 11,515 | 11,823 |
| 비정규직    | 5,445  | 5,754  | 5,685  | 5,995  | 5,911  |
| 비정규직 비중 | 33.8   | 34.9   | 33.3   | 34.2   | 33.3   |

자료 : 통계청(2012),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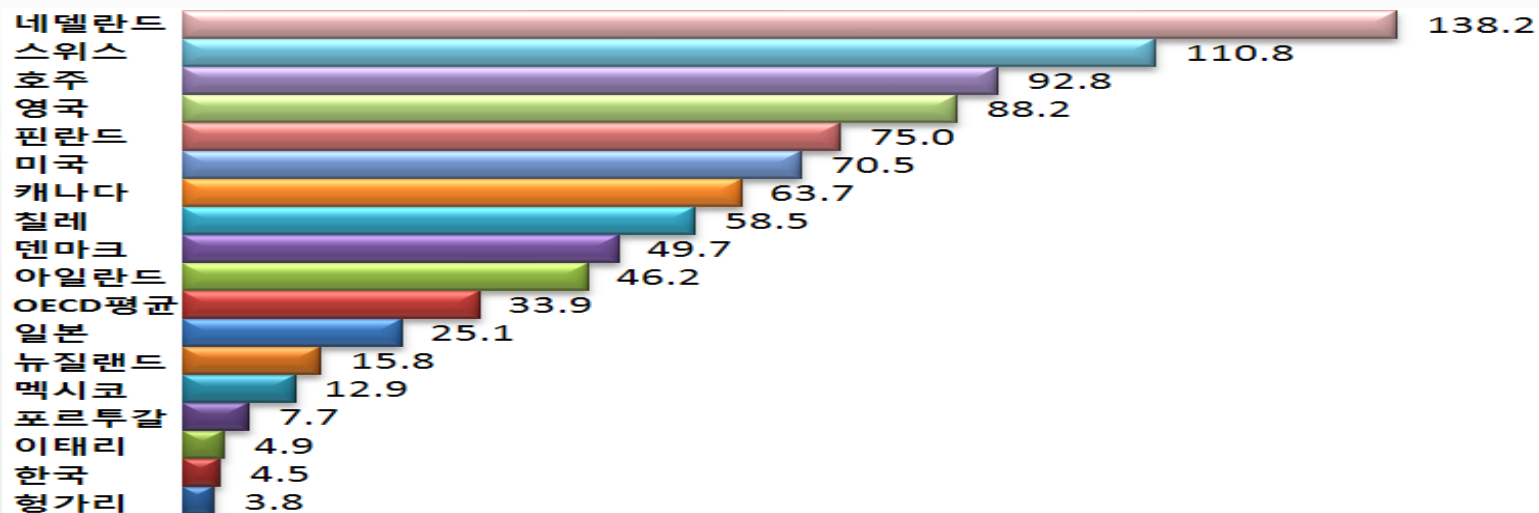
베이비부머 연금가입률



자료 : 정경희 외(2011)

- GDP 대비 사적 연기금의 자산비중 : OECD 평균 33.9%
- 2012년 기준 GDP 대비 사적연기금 자산비중은 4.5%에 불과

GDP 대비 사적연기금 자산비중 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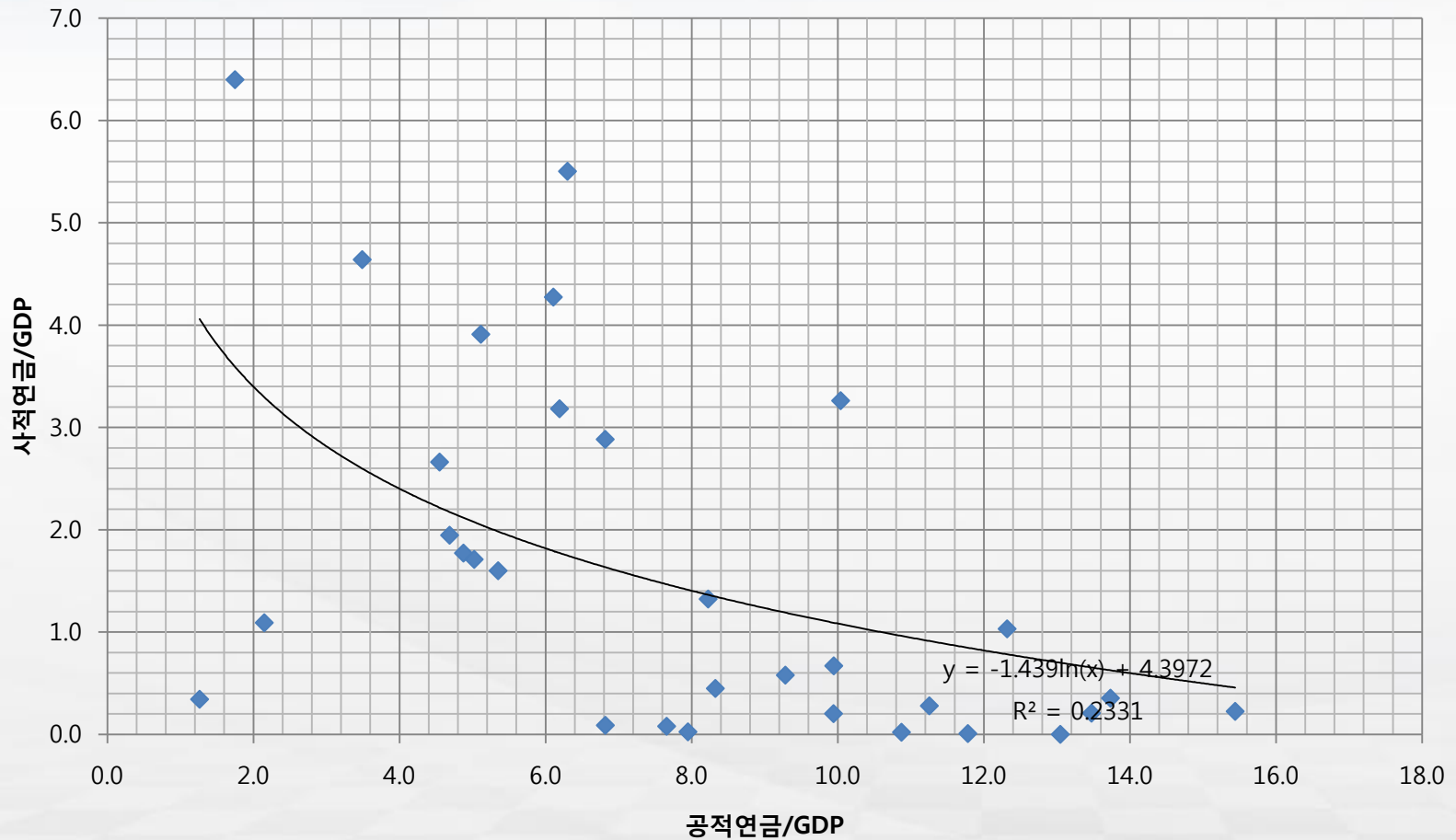


주 : 사적연금에 퇴직연금 포함

자료: OECD(2012) Pension Markets in Focus

## ▶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비중은 역비례 관계 (OECD국가)

● 한국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모두 低 발전단계



## 연금수급 가능성 제고

직장이동에도 연금수급가능한 상품환경 조성(Portability)

## 사적연금 Positioning

공적연금과 보완적인 상품 구성과 Targeting

## 재정 건전성의 확보

장수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건전 시스템 구축

## 사업 효율성의 증진

수수료 등 적정 사업비 경쟁구도의 조성

## ● 사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일익 담당 필요

- ▶ 개인퇴직연금 계정 중심 활성화
- ▶ 퇴직 후 연금수급 선택자 비율 증가대책 수립
- ▶ 퇴직연금 상품간 연계 강화와 이전비용 최소화

### 평균 근속기간의 분포



### 퇴직연금 연금선택률 현황

|               | 일시금수령  |        | 연금수령        |         | 합 계    |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              | 수급자수   | 금 액    | 수급자수        | 금 액     | 수급자수   | 금 액    |
| '13.1/4분기(비중) | 48,532 | 15,689 | 1,489(3.0)  | 17(0.1) | 50,021 | 15,706 |
| '12.4/4분기(비중) | 35,553 | 4,200  | 1,362 (3.7) | 19(0.5) | 36,915 | 4,219  |
| 증가액           | 12,979 | 11,489 | 127         | △2      | 13,106 | 11,487 |

## ● 협의의 연금지급보장제도만 존재

- ▶ 확정 급여형: 3년 이상 장기근로자에 대한 수급권 보호에는 한계
- ▶ 부분적인 적립(최소책임준비금의 60% 이상 적립) : 최대 40%의 미적립채무 발생
- ▶ 확정 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 : 예금자 보호한도(5,000만원)의 수준 미흡

### 연금지급의 보장장치 현황

| 구 분                | 보장범위              | 적용대상                 | 특징                     | 관련법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퇴직급여<br>우선변제<br>제도 | 최근3년<br>분에 한정     | 퇴직급여<br>대상           | 사업주 재산<br>이 있을 시<br>지급 | 근퇴법<br>제12조        |
| 임금채권<br>보장기금<br>제도 | 최근 3년분,<br>상한액 설정 | 임금·휴<br>업수당 및<br>퇴직금 | 지급보증<br>제도 일부<br>기능    | 임금채권<br>보장법<br>제8조 |
| 예금자<br>보호제도        | 5,000만원           | DC형/IRA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| 예금자<br>보호법         |

### 연금지급의 보장장치 문제점

| 구 분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제반 문제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사전적<br>수급권 보호 | 최소적립 수준             | 최대 40%의<br>미적립채무 발생 |
|               | 적기시정조치              | 선진국의<br>적기시정조치와 괴리  |
| 사후적<br>수급권 보호 | 채권자우선변제<br>임금채권보장기금 | 실질적<br>수급권 보호에 한계   |
|               | 예금자보호제도             | 정기성 특성 미반영          |

## ▶ 공적연금 위상의 미정립 상태 : 사적연금 기능의 혼선

- 퇴직연금의 성격 모호, 개인연금의 발전 지체

|     | 1柱(1st pillar)                | 2柱(2nd pillar)             | 3柱(3rd pillar)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성 격 | 강제적용, 공적제도                    | 강제적용, 민간운용                 | 임의적용, 민간운용      |
| 재정식 | 세금(tax)으로<br>재원 조달            | 완전 적립방식,<br>정부의<br>간접적인 규제 | 완전적립방식          |
| 형 태 | 소득조사 실시,<br>최저연금보장 또는<br>정액연금 | 직역연금 또는<br>개인연금            | 직역연금 또는<br>개인연금 |
| 목 적 | 소득재분배                         | 저축 + 보험 기능                 | 저축 + 보험 기능      |

▶ 사적연금은 중간계층과 상층계층 중심으로 Targeting

- 개인연금은 자영업자에 필요한 상품 개발 (universal 연금보험)

| 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|
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개인연금   |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|
| 퇴직연금   |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|
| 국민연금   |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|
| 기초노령연금 |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|
| 소득계층   | 0~20% | 20~40% | 40~60% | 60~80% | 80~100% |

▶ 근로계층에 대해서는 퇴직 후 공적연금 수급 이전기간(소득Crevasse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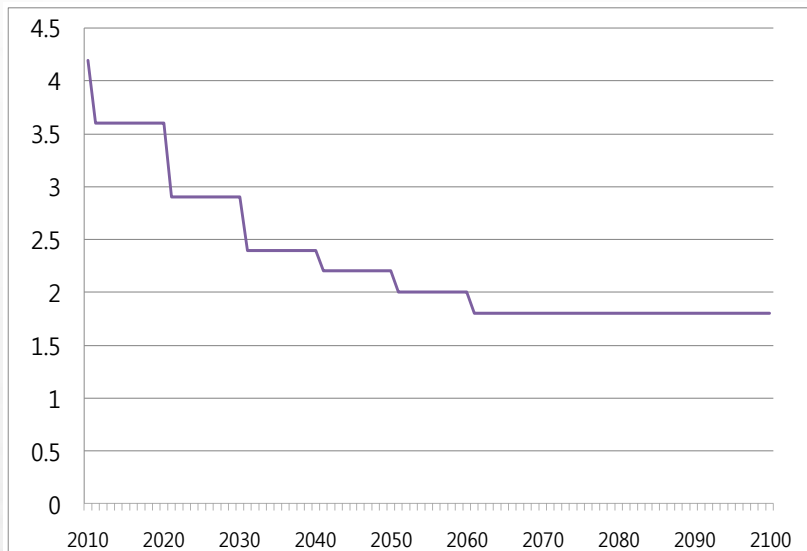
● 55~70세의 소득 필요기간의 소득 안정에 포인트

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
| 개인연금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|
| 퇴직연금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|
| 국민연금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|
| 기초노령연금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|
| 소득계층   | 55~60세 | 60~65세 | 65~70세 | 70~75세 | 75세이상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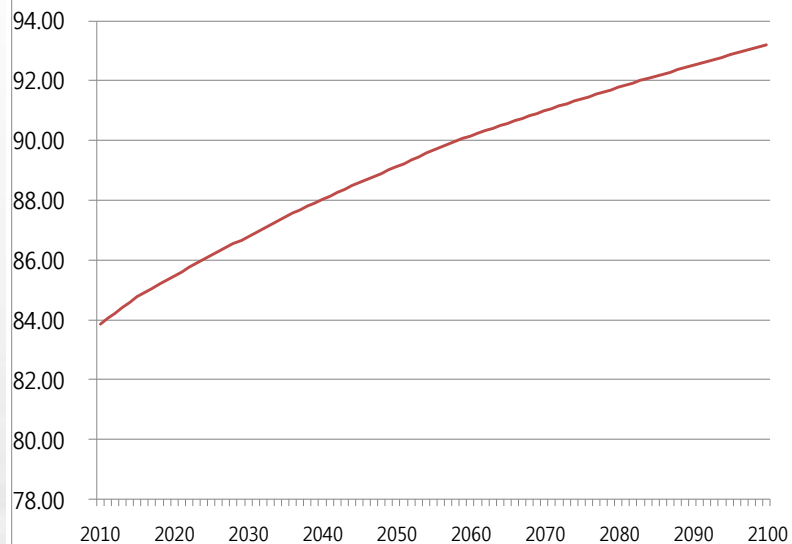
## ● 장기적으로 금리리스크와 장수리스크 통제 필요

- ▶ 역금리 문제 개선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필요
- ▶ 고객 요구에도 불구하고 종신연금형 상품 개발 자제
- ▶ 연금부채 산정 등 건전재정 기준의 강화

### 금리전망 : 장기적 저금리 경향



### 기대수명 [여] : 100세 시대



## ● 실질적인 높은 수익률 확보가 관건

- ▶ 보험회사의 실질 수익률 개선 대책 마련
- ▶ 보험회사의 판매채널의 효율성 제고
- ▶ 보험사 특화된 맞춤형 연금상품 개발 (라이프 사이클 반영 상품 등)

금융기관별 운용수익률(2012년)

| 은행권 |       |       | 증권사 |      |       | 생명보험 |       |      | 손해보험 |       |       | 수익률 |
|-----|-------|-------|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|
| 기관  | DB    | DC    | 기관  | DB   | DC    | 기관   | DB    | DC   | 기관   | DB    | DC    | 순위  |
| 제주  | 4.76  | 4.67  | 삼성  | 5.12 | 4.19  | ING  | 1.34  | 1.07 | 메리츠  | 4.89  | 4.75  | 1   |
| 산업  | 4.73  | 4.65  | 대신  | 5.05 | 4.03  | 흥국   | 1.22  | 1.10 | 현대   | 4.80  | 4.48  | 2   |
| 하나  | 4.67  | 4.63  | 동양  | 5.01 | 4.74  | 미래   | 1.18  | 1.04 | 동부   | 4.79  | 4.74  | 3   |
| 신한  | 4.66  | 4.61  | 현대  | 5.01 | 4.30  | IBK  | 1.18  | 1.13 | 롯데   | 4.65  | 4.68  | 4   |
| 우리  | 4.60  | 4.55  | 대우  | 4.94 | 4.69  | 동양   | 1.17  | 1.01 | 그린   | 4.61  | 4.67  | 5   |
| 국민  | 4.59  | 4.51  | 신한  | 4.93 | 4.33  | 동부   | 1.16  | 1.09 | 삼성   | 4.58  | 4.41  | 6   |
| 외환  | 4.58  | 4.62  | 한투  | 4.90 | 4.89  | 신한   | 1.16  | 1.14 | LIG  | 4.53  | 4.26  | 7   |
| 농협  | 4.50  | 4.56  | 미래  | 4.88 | 4.48  | 교보   | 1.15  | 1.11 | 한화   | 4.09  | 4.20  | 8   |
| 부산  | 4.45  | 4.73  | 우리  | 4.85 | 4.69  | 한화   | 1.08  | 1.12 | -    | -     | -     | 9   |
| 광주  | 4.39  | 4.51  | HMC | 4.82 | 4.23  | 메트   | 1.08  | 0.71 | -    | -     | -     | 10  |
| 경남  | 4.36  | 4.61  | 하나  | 4.72 | 5.25  | 삼성   | 1.05  | 1.07 | -    | -     | -     | 11  |
| 수협  | 4.25  | 4.32  | 신영  | 3.71 | 4.08  | KDB  | 1.01  | 0.91 | -    | -     | -     | 12  |
| SC  | 4.19  | 4.07  | 농협  | 3.66 | 2.89  | -    | -     | -    | -    | -     | -     | 13  |
| 씨티  | 3.73  | 4.5   | -   | -    | -     | -    | -     | -    | -    | -     | -     | 14  |
| 평균  | 62.46 | 63.54 | 평균  | 61.6 | 56.79 | 평균   | 13.78 | 12.5 | 평균   | 36.94 | 36.19 | /   |
|     | 4.46  | 4.53  |     | 4.73 | 4.36  |      | 1.14  | 1.04 |      | 4.61  | 4.52  |     |

금융기관별 수수료 공제 후 수익률(2011년)

###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수익률

(2011년)

| 금융회사    | 수익률(연 %) |
|---------|----------|
| 삼성생명    | 2.17%    |
| 한국투자증권  | 1.45%    |
| 산업은행    | 1.40%    |
| 교보생명    | 1.32%    |
| 대한생명    | 0.81%    |
| 삼성증권    | 0.41%    |
| 국민은행    | 0.37%    |
| 외환은행    | 0.31%    |
| 하나은행    | 0.16%    |
| HMC투자증권 | 0.08%    |
| 기업은행    | 0.00%    |
| 신한은행    | -0.22%   |
| 우리은행    | -0.23%   |
| 하이투자증권  | -0.45%   |

### 금융회사 수익률(연 %)

|        |        |
|--------|--------|
| 삼성화재   | -0.57% |
| 농협     | -0.86% |
| 미래에셋증권 | -2.45% |
| 미래에셋생명 | -2.64% |
| LIG손보  | -3.07% |
| 롯데손보   | -3.29% |

자료: 타워스왑스코리아

###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

단위: 원



# 고령화 사회에서의 보험회사 성장전략

2013. 8. 19

보험연구원 이태열


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   | 한국의 복지와 성장 .....     | 3  |
| II  | 우리나라 복지체제의 문제점 ..... | 8  |
| III | 한국 복지의 미래 과제 .....   | 19 |





# 한국의 복지와 성장



# I. 한국의 복지와 성장

## ❖ 우리나라 고령층의 복지 상황은 국제적인 수준에 크게 미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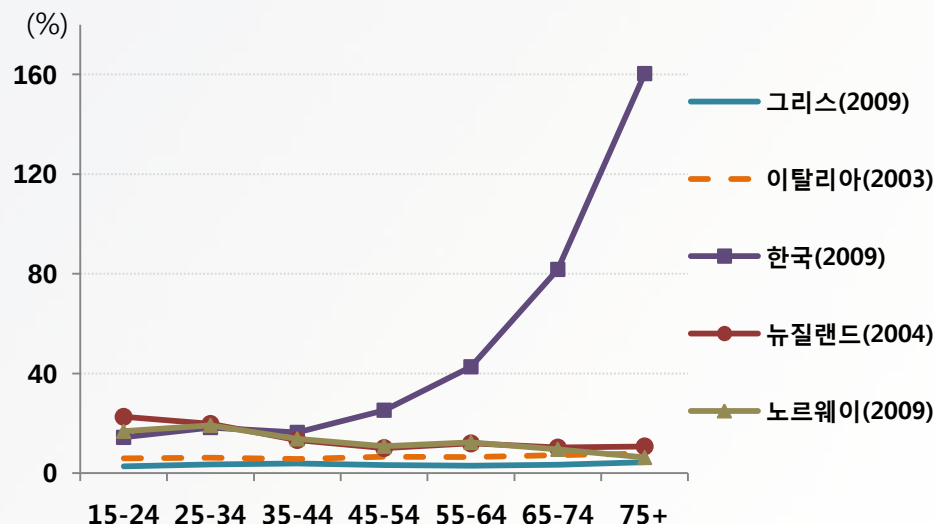
- 복지체제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노인인구가 증가
  - ※ [국민연금 도입 '88, 건강보험 전국민 적용 '89]
- 노인 빈곤율, 자살률 등 OECD 회원국의 정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남.

### 노인 빈곤율



자료: OECD. "Growing Unequal?", 2011

### 노인 자살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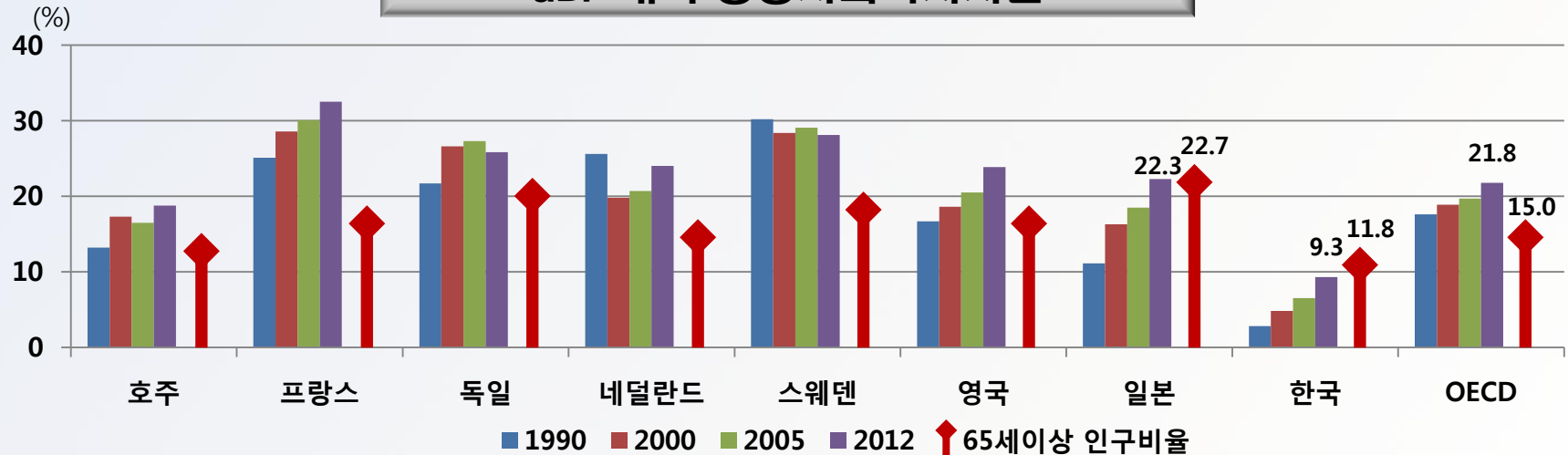


주 : 자살률은 10만 명 당 자살자 수를 나타냄  
 자료: OECD. Society at a Glance 2009

## ❖ 향후 노인인구가 급증할 것을 고려 시 재정 능력도 의문

- 90년 이후 경제규모대비 복지지출 규모가 빠른 증가세 지속
- 주요 선진국의 노인인구 비율은 우리나라와 비교시 약 1.5 ~ 2.0배 수준
- 노인인구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늘고 있어 재정 여력의 급속한 소진 우려

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



주: 일본의 2012년 그래프는 2009년 자료임.

65세 이상 인구비율은 한국, 호주, 영국(2012), 일본(2009), 그 외(2011) 자료임.

자료: OECD, 'Society at a Glance Data', 2012

# I. 한국의 복지와 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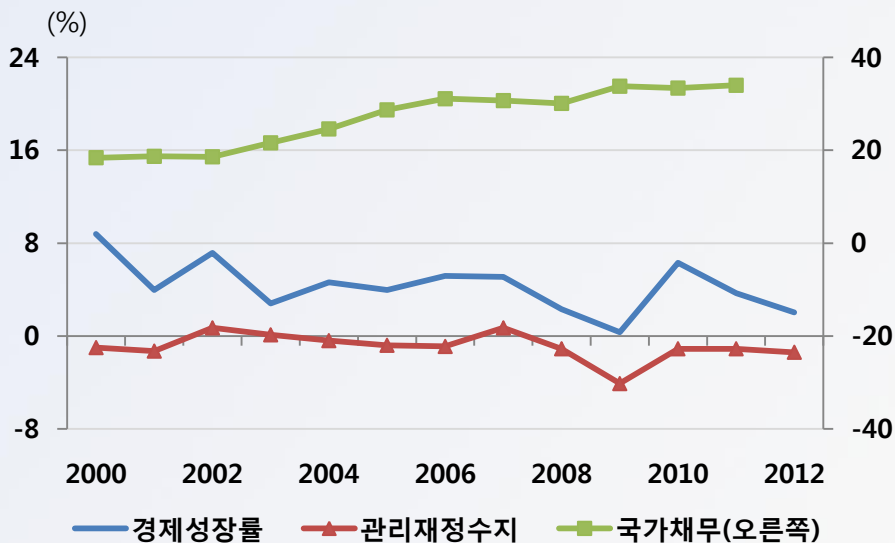


## ❖ 경제성장 능력과 국가 재정여력은 모두 악화 진행

- '08년 이후 성장률은 4% 미달('10년을 제외), 재정수지는 적자 지속, 국가채무 증가
-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 모두 저성장 국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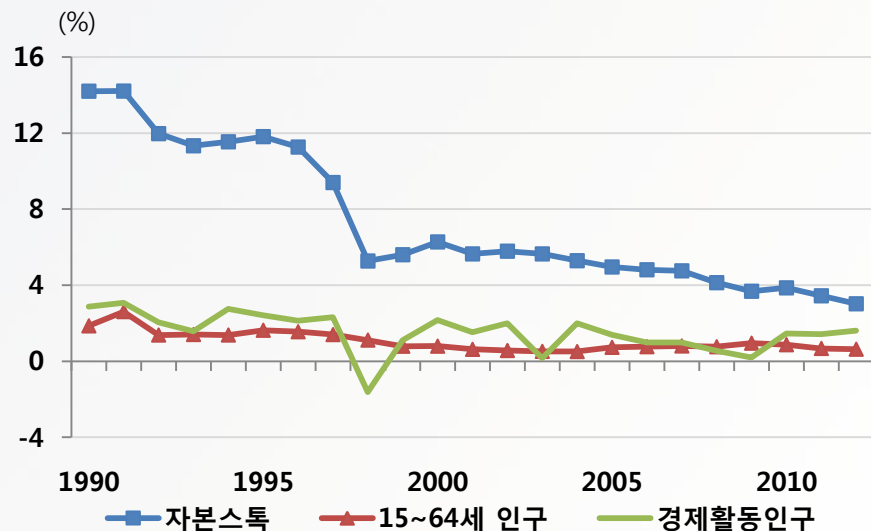
※  $Y_t = A_t L_t^a K_t^{1-a}$  Y는 GDP, A는 총요소생산성, L은 노동력, K는 자본스톡

경제 지표



주: 경제성장률은 전년비 %이며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GDP 대비 %임.  
자료: KOSIS

고정자본 및 인구증가율



자료: 통계청, 자본스톡은 보험연구원 추정

# I. 한국의 복지와 성장

## ❖ 경제성장능력의 소진과 복지지출 상승 압박이 동시에 진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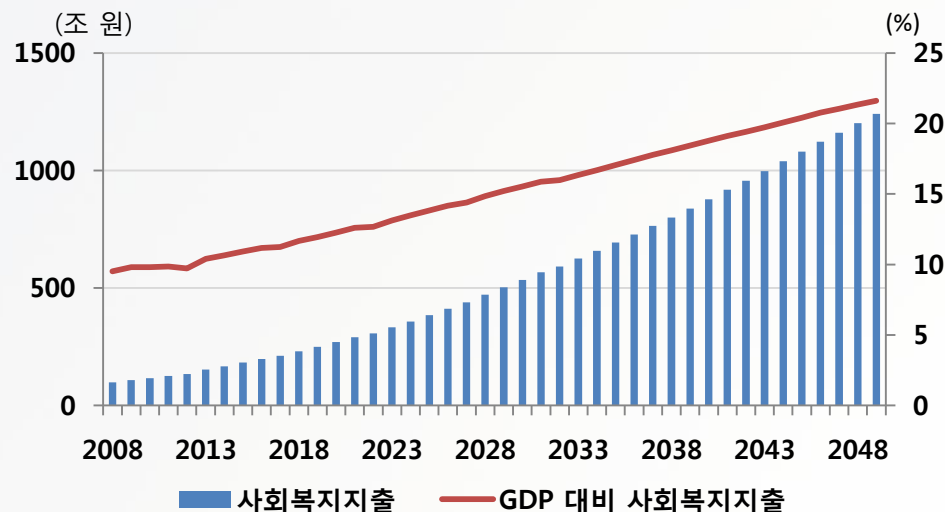
- 잠재성장률은 이미 4% 이하로 하락했으며 향후 만성적인 저성장 예상
- 현재 복지체제를 유지해도 GDP 대비 복지지출 부담은 '40년대 중반 20% 상회
- '저성장 속의 복지부담 증가'는 사회적 고통을 수반할 수 밖에 없음.

GDP 잠재성장률



자료: 신석하 외(2012),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 및 하락 요인 분석

GDP 및 사회복지지출 전망 (2012=100)



자료: 박형수 외(2009),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



## 우리나라 복지체제의 문제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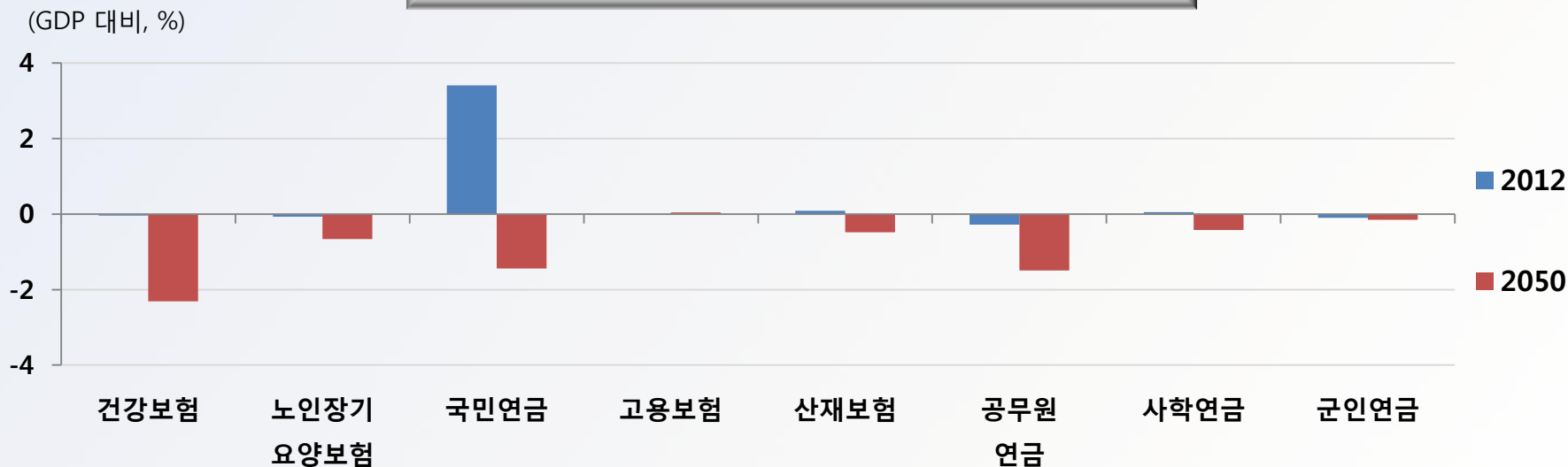
## II. 우리나라 복지체제의 문제점



### ❖ 복지지출은 주로 고령화와 관련된 부문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

- 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공무원 연금 등이 대표적인 재정 압박 요인으로 예상
- 국민연금의 경우 '44년 이후 적자발생, 16년만에 재정 고갈 예상
- 우리나라 복지 비용의 문제는 고령화에 대한 대비 문제

항목별 공공사회복지지출 재정추계



자료: 박형수 외(2009),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

## II. 우리나라 복지체제의 문제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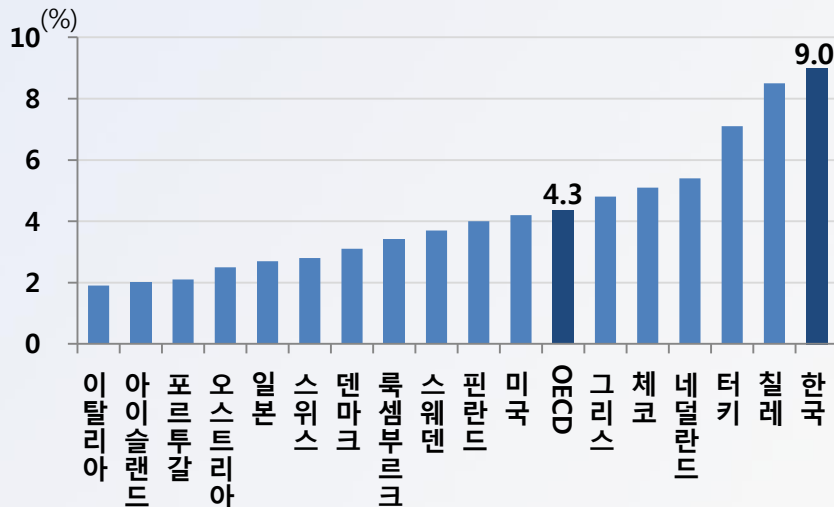


### ❖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는 고령자층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

- 최근 1인당 의료비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수준
- 특히 고령층의 의료비 증가가 크게 나타나면서 전체 의료비의 1/3을 상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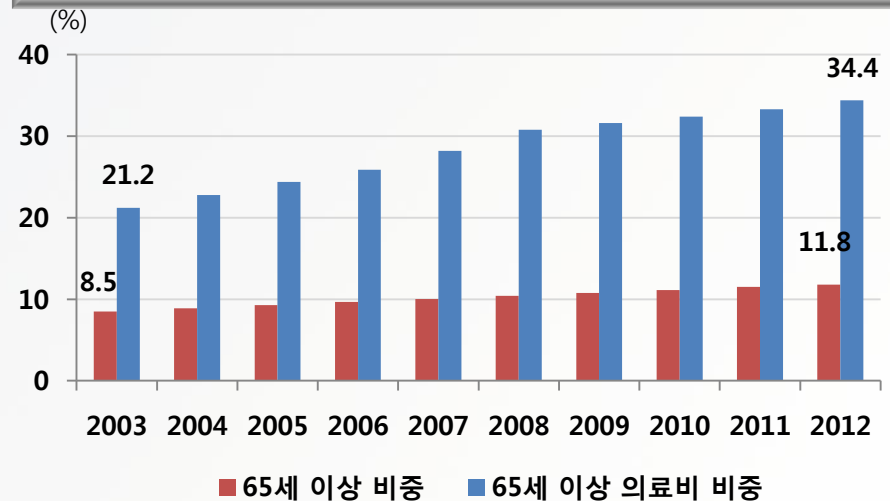
※ 노인인구비중 : 8.5% ('03) → 11.8%('12), 의료비 비중 : 21.2% → 34.4%

OECD 1인당 의료비 증가율 (2000-2010)



자료: OECD, "Health Data", 각 년

연령별 인구수 추이



자료: 보건복지부, 2012 건강보험통계연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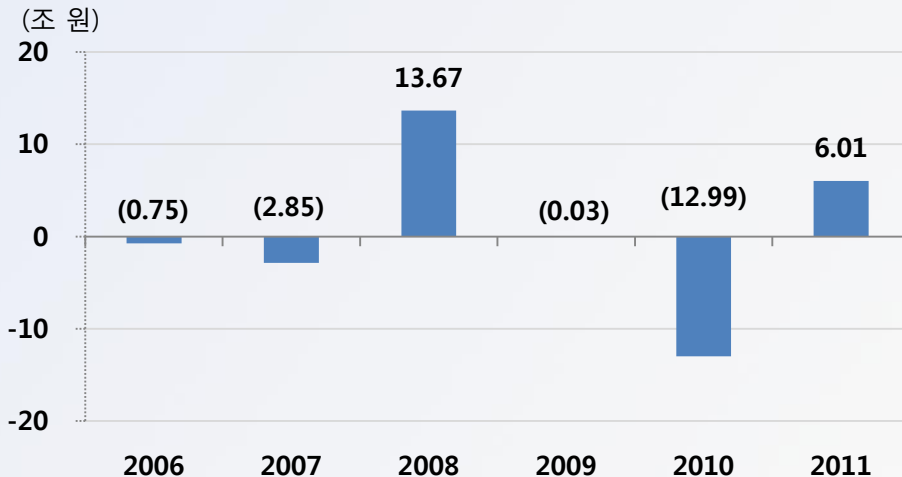
## II. 우리나라 복지체제의 문제점



### ❖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향후 큰 폭의 적자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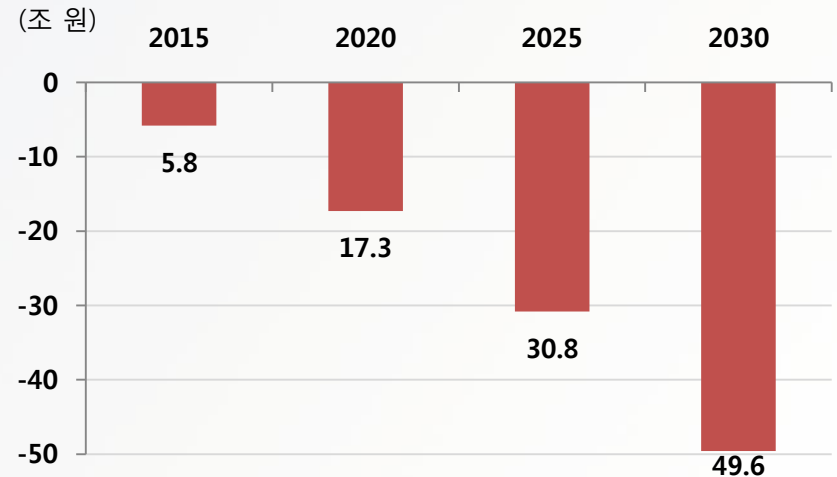
- 최근 약제비 인하 등의 노력으로 재정 악화 방지
-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1인당 의료비 상승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불가피
- '15년 약 6조원에서 '30년 약 50조원 적자 예상

국민건강보험 재정수지 추이



자료: 국민건강보험공단

국민건강보험의 재정수지 전망



자료: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(2010.1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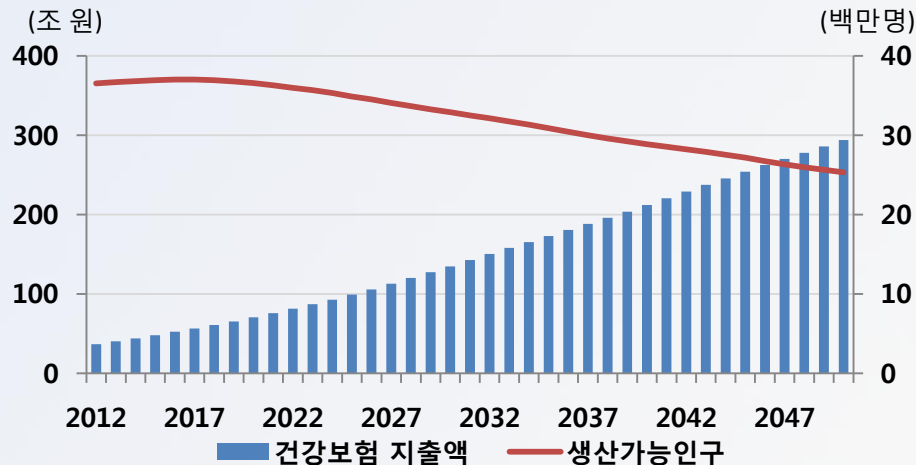
## II. 우리나라 복지체제의 문제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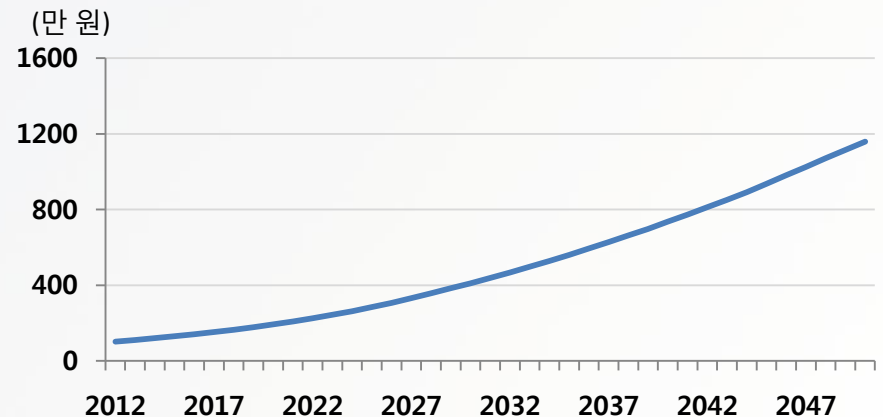
### ❖ 국민건강보험 지출부담 상승과 납부자 수 감소 우려

-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건강보험 예상 지출액은 급증세
- 반면, 생산가능인구는 '12년 3천6백만에서 '50년에는 2천5백만명 수준으로 감소
- 50년까지 국민건강보험 지출은 8배 증가, 생산가능인구당 지출은 11.5배 예상

국민건강보험 지출 추계



생산가능인구당 국민건강보험 부담



자료: 박형수 외(2009),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 
인구추계 Kosi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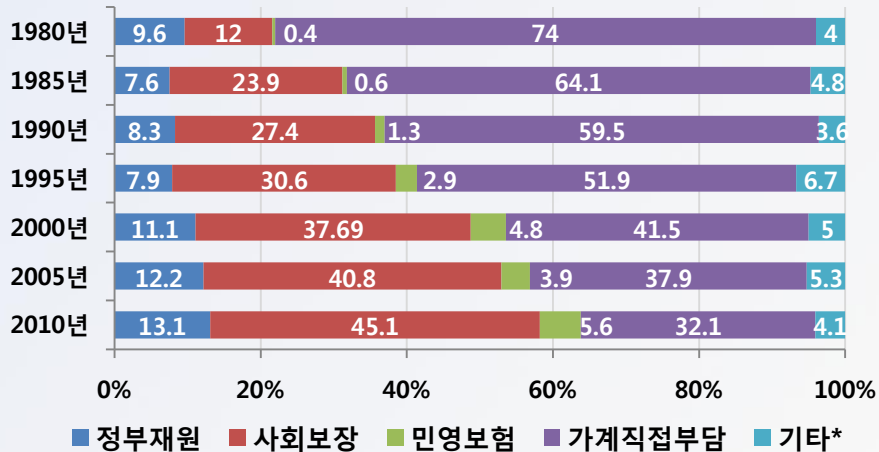
## II. 우리나라 복지체제의 문제점



### ❖ 민영건강보험은 그간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령층 보장 취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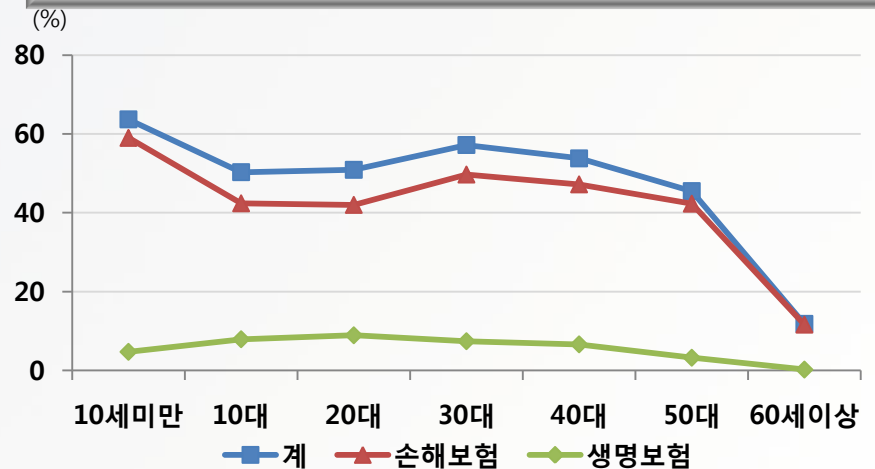
- 민영건강보험은 국민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성장
- 반면, 국민의료비에서의 역할은 아직 제한적 ('10년 기준 5.6%)
- 특히, 의료비 부담이 큰 고령자에 대해서는 역할이 미미한 실정

국민의료비 재정 구성의 추이



주: 기타에는 민간비영리단체와 기업이 포함됨.  
 자료: 보건복지부, 2010년 국민의료비 및 국민의료계정, 2012

실손의료보험 가입률



주: 생명보험은 '10.12월 말, 손해보험은 '11.3월 말 기준임.  
 자료: 보험개발원 보도자료(2011. 12. 28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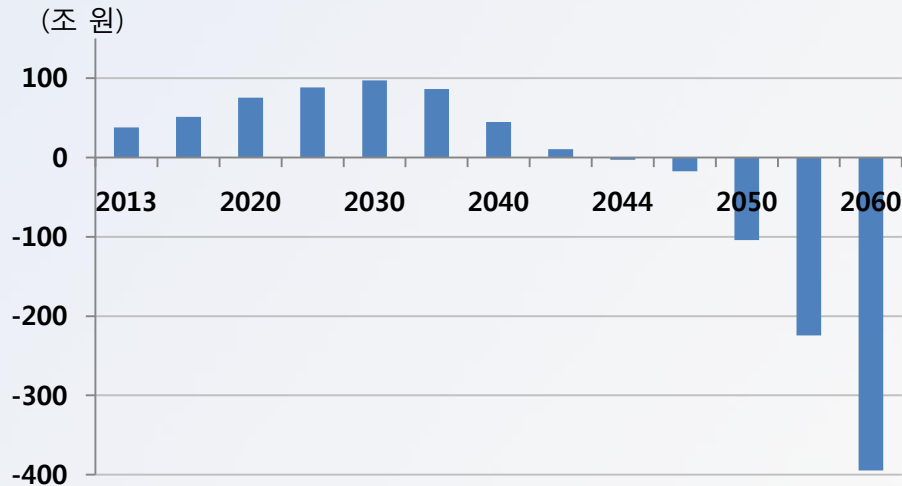
## II. 우리나라 복지체제의 문제점



### ❖ 국민연금은 '44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여 '60년 고갈 예상

-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기본 구조상 기금 고갈 불가피
- 수급개시연령 연기, 소득대체율 인하 ('88년 70%→'07년 40%) 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

국민연금 재정추계



자료: 제 3차 국민연금 제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(2013. 3). 보건복지부

수급개시연령 (2007 개정)

| 출생연도(년)     | 수급개시연령(세) |
|-------------|-----------|
| 1953 ~ 1956 | 61        |
| 1957 ~ 1960 | 62        |
| 1961 ~ 1964 | 63        |
| 1965 ~ 1968 | 64        |
| 1969년생 이후   | 65   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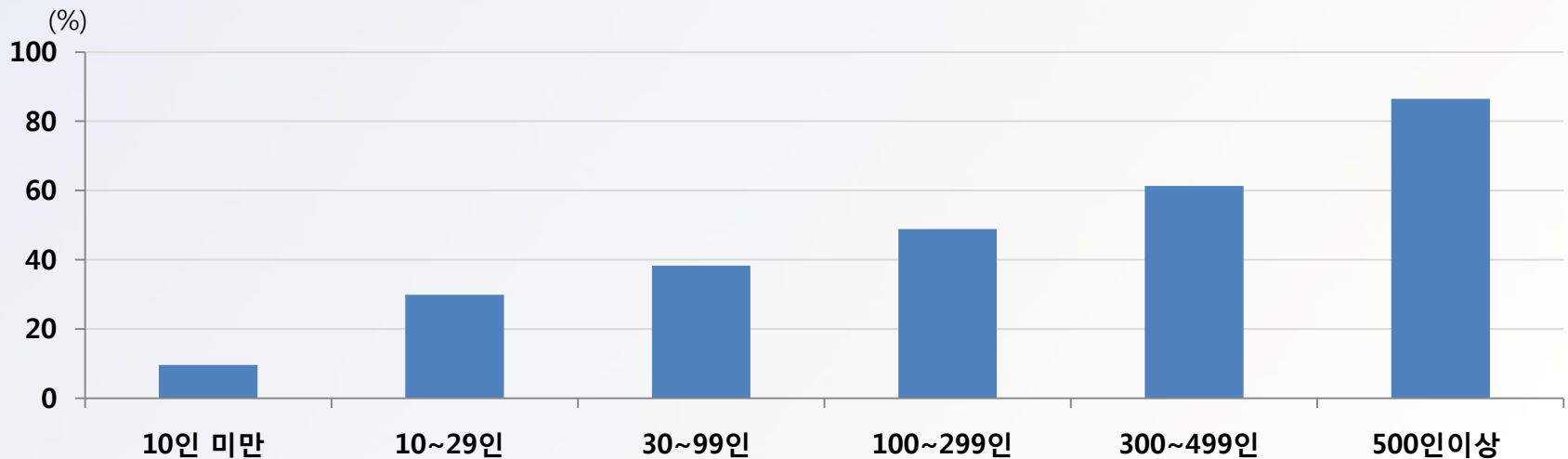
## II. 우리나라 복지체제의 문제점



### ❖ 퇴직연금은 대형사업장의 상용근로자 위주로 편중 가입

- 상용근로자 기준 '12말 기준 46.0% 가입
- 사업장 기준 가입률은 13.4%에 불과 (10인 미만 사업장 9.6%)
- 자영업자 개인퇴직계좌 가입은 '17년부터 가능

퇴직연금 사업장 규모별 가입률



주: '12년 말 기준, 평균 13.4%

## II. 우리나라 복지체제의 문제점



### ❖ 개인연금은 적립금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낮은 상태

- 가구당 가입률은 20%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서 정체

[가입률 : 1분위 6.4%, 2분위 9.1%, 3분위 19.8%, 4분위 22.5%, 5분위 44.9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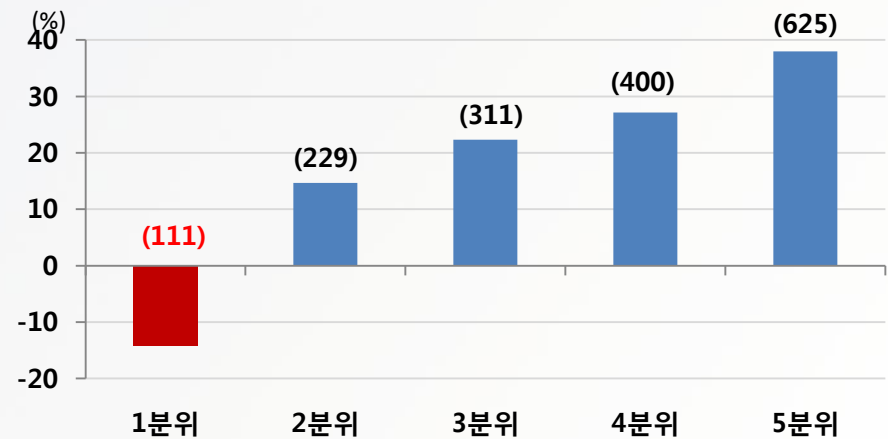
- 도시가구 흑자율을 기준으로 할 때 1, 2분위의 가입 여력은 취약

개인연금 가구당 가입률 및 적립금 규모



자료: [개인연금 활성화 방안] 보도자료 인용(금융위원회, 2013.8)  
가구당 가입률은 보건사회연구원 복지패널조사 자료임.

소득 5분위별 흑자율 (2012년)



주: 소득 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(도시, 2인 이상)  
괄호는 가처분 소득임(단위: 만원)  
자료: KOSI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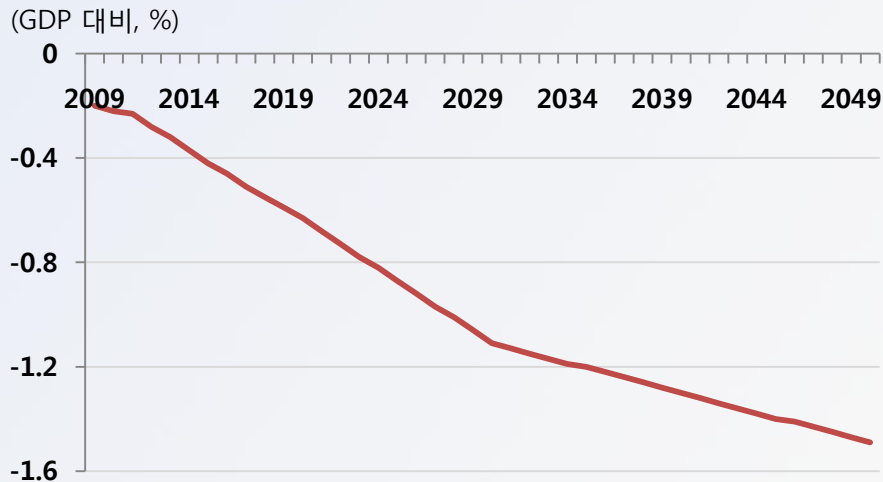
## II. 우리나라 복지체제의 문제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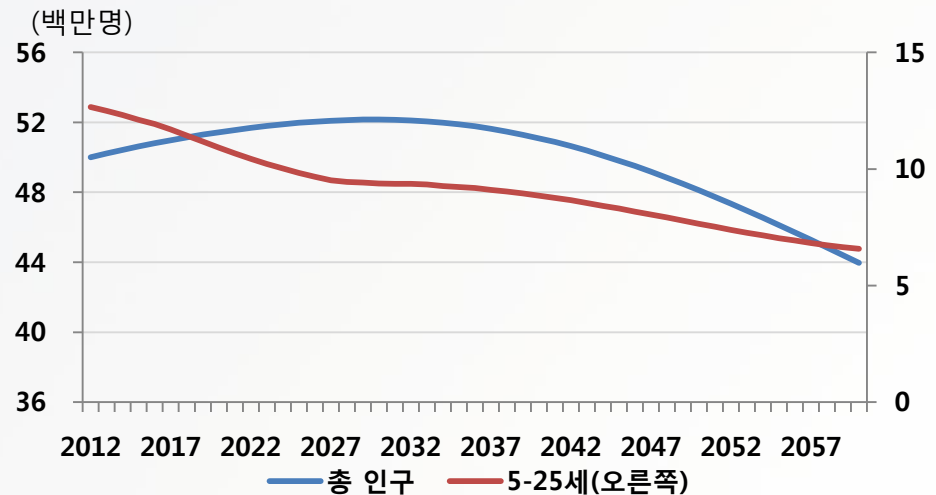
### ❖ 공무원 연금, 사학연금 등 특수 직역연금의 지속성도 취약

- 공무원 연금의 경우 재정 적자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적자폭 지속 확대
- 사학연금은 학생 수의 급속한 감소로 사학연금 납부자수 감소 가능성

공무원 연금 재정 적자 추계



전체인구, 5~25세 인구 추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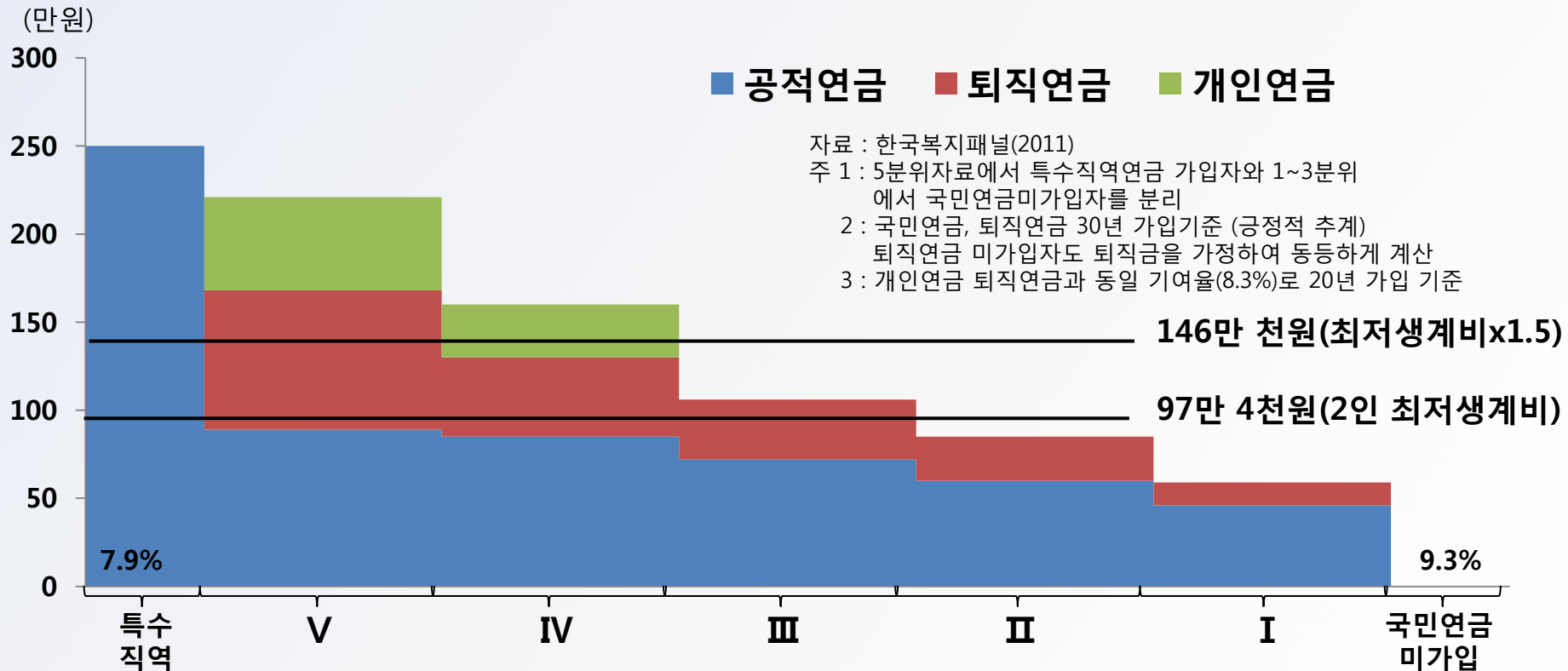
자료: 박형수 외(2009),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

자료: KOSIS

## II. 우리나라 복지체제의 문제점



- ❖ 우리나라 가계의 미래 노후 소득을 가급적 긍정적인 가정으로 추계
- ❖ 3분위의 노후 준비 정도가 향후 우리나라 고령화 문제의 핵심
- ❖ 3분위 이하 노후 소득 안정화 위해 사적연금(3분위)과 공공지원(1,2분위) 필요





## 한국 복지의 미래과제



# Ⅲ. 한국 복지의 미래 과제

**Funded Future : 후세대에 추가적인 부담을 야기하지 않고 노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적립하는 것**

## 경제 시스템 불안

- 재정 건전성악화가 확실할 경우 대외신인도 하락
  - 높은 대외의존도,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약점도 부각
- 자본 이탈, 주가 하락, 금리 상승 등 금융위기
  - 재정조달 비용 상승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심화

## 미래 복지시스템의 지속성 부족

## 사회적 갈등

- 대다수 국민의 노후 소득 부족 상태 발생
- 높은 소비세 의존 지속
- 다수의 저소득 고령층이 소수의 고연금 생활자를 보조

**Funded Future : 후세대에 추가적인 부담을 야기하지 않고 노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적립하는 것**

## Funded Future

- 후세대의 추가적 부담 없이 스스로 소비 창출
- 후세대의 고용 및 소득 증가
- 경제성장동력의 한 축

**VS**

## Unfunded Future

- 고령층 소비 재원을 후세대 부담
- 후세대 조세 부담 증가, 가처분 소득 하락
- 국가 경제의 부담 및 사회적 불안의 요인

# Ⅲ. 한국 복지의 미래 과제: 건강보험

## 국민 건강보험

- 납부자 저변 확대(65세 이상 별도 요율 적용 검토)
  - 취업자의 감소는 재정에 심각한 영향

## 민영 건강보험

- 다양한 특화 상품 개발
  - 건강관리 등 서비스
  - 노인성 질병 특화
- 리스크 관리 강화
  - 성장보다 리스크 관리
  - 제3자 청구제

### 공 적 보 험

국민 의료비의 효과적인 보장  
(보장확대와 의료비 통제)

### 공사협력

### 민 영 보 험

의료비 심사, 통계 활용  
(공공성 확보, 상품 개발 능력 제고)

# Ⅲ. 한국 복지의 미래 과제: 연금

## 국민연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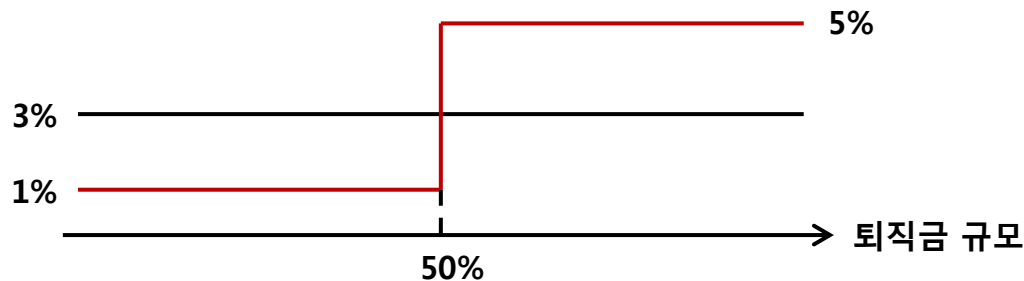
- 보험료 인상 불가피
- 수급연령 연기  
(세대간 형평성 제고 불구 소득대체율 인하 효과 우려)

## 특수직역 연금

- 더 내고 덜 받는 개혁 불가피
- 공무원연금 재정 적자 상한선

## 사적연금

- 취약계층 소액연금 활성화 (3분위 노후 소득 확충)
- 연금의 매력도 제고 필요 (수익률은 국민연금에 비해, 자금 활용도는 퇴직금에 비해 불리)
- 퇴직금제도 세제 개선 및 개인 연금 인출 요건 완화



##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판매채널
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판매채널 형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온라인 웹사이트와 같은 저렴한 채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배 구조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민간 자원의 독립기관을 원칙으로 함</li> <li>정부 지원 시 공공부문의 지배구조 참여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판매 대상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취약계층 : 저소득계층 고령층<br/>(생애 최초 가입자, 청년층 등도 고려)</li> <li>판매채널 진입 시 사전 인증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|
| 취급 상품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단순한 형태의 소액 상품 (정부 인증 상품 고려)<br/>- 연금, 정기, 상해, 건강 등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언더라이팅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저렴한 사업비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는 역선택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</li> <li>판매채널에 참여하는 업계의 공동 언더라이팅 허용</li> </ul> |

**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**

